
권리의 관점으로 읽는 산업안전보건법 기획 강좌 자료집

「일시」 2019년 2월 26일~3월 26일, 매주 화요일 19시

「장소」 용산 철도회관 6층 대회의실

공동주최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18기 노동자의벗

목 차

[1강]	노동자 건강권과 산업안전보건법 이해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1
[2강]	알 권리로서의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산재보고 이성민 (공인노무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29
[3강]	거부할 권리로서 산업안전보건법 - 도급, 작업중지권 등 조은혜 (돌꽃 노동법률사무소)	... 43
[4강]	참여할 권리로서 산업안전보건법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 관리체제 이진아 (이산 노동법률사무소)	... 57
[5강]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열쇠 - 작업환경측정, 역학조사, 건강검진 권종호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67
[별첨1]	산업안전보건법	... 79
[별첨2]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 133

☑ 연락처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www.kilsh.or.kr 02-324-8633 (서울)

| 노벳 팀장 여수진 010-3233-0439

[1]

노동자 건강권과 산업안전보건법 이해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김용균법'은 남았다](#)

오마이뉴스 PICK 2019.02.09. 네이버뉴스

하청노동자 김용균씨의 사망을 계기로, 활용성 같았던 죽음의 외주화 구조가 개선됐고, 비정규직이던 김씨 동료들은 정규직 노동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일 산업안전보건법(아래 산안법)...

3

- “바뀌어야 하는 점은 우리의 목소리가 커져야 한다는 거예요. 뭔가 얘기를 해도 바뀌는 것도 없고, 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이 건 노동조합만이 아니라, 내가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에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얘기를 해도 한 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니까.”
- “우리가 직접 일하는 사람이에요. 현장 일에 귀 기울여주고,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 우선순위로 뒤 쫓으면 싫어요.”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중>

4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유가족 국회서 기자회견](#) 대전일보 1시간 전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고 김형준 씨의 어머니 최민숙씨가 아들의 죽음의 진상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진상 규명·재발 방지 및 책임자 처벌 촉구 지난 14일...

↳ [올먹이는 대전 한화 공장 폭발 사고](#) ... 뉴스1 6시간 전 네이버뉴스

↳ ["아직 CCTV도 못 봤다" 한화폭발사](#) ... 뉴스한국 3시간 전

[5년간 하청 노동자 4명 사망...현대제철 당진공장 산재보험료 105억 감면](#)


메디컬투데이 13시간 전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최근 한 청년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지난 5년 동안 105억원 가량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건강'의 정의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_____ , _____ , _____ 으로
완전히 안녕한(행복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
이다.

- 세계보건기구 

노동자의 건강, 건강할 권리는...

노동자가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일할 권리

* 그러나 건강권은 훨씬 더 많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건강이란!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온전히 행복한 상태를
말한다.

다치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고 이윤과 생산을
위해 희생되지 않을 권리

스트레스에 대한 자주적/
민주적인 자율성을 가질 권리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의료
등을 모든 사회구성원이 고루
누려야 할 모든 사회적 권리

사상, 종교, 이념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말하고
행동하며 조직할 권리

9

'노동자 건강권'의 정의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을 할 권리와
그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작업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갖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안전하게 일할 권리, 건강하게 일할 권리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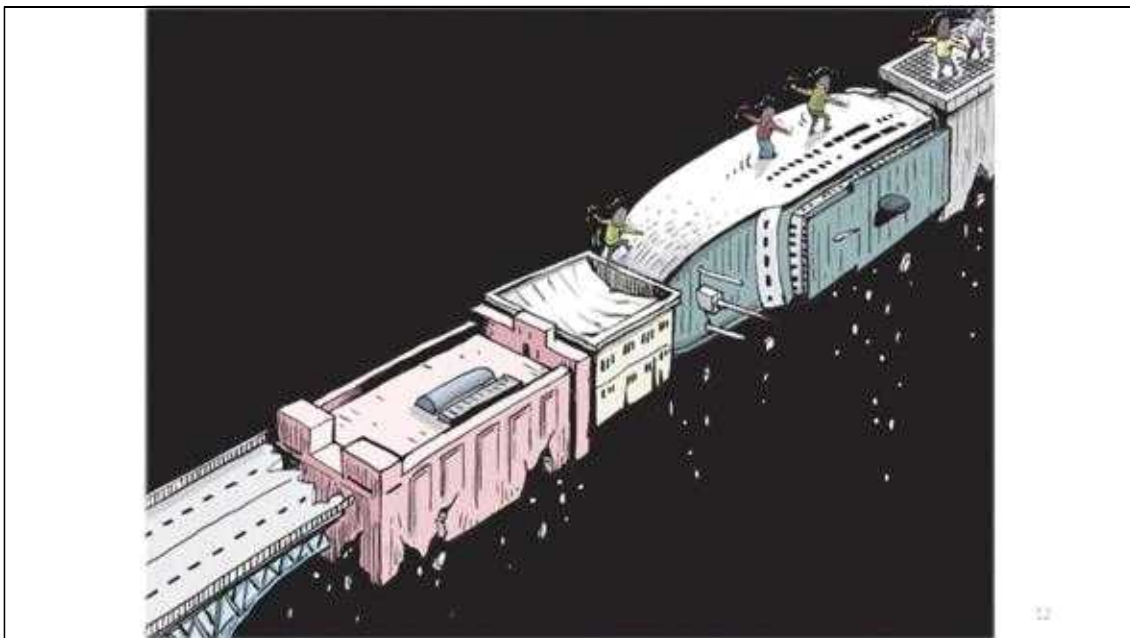
웃을 수 없는 현실!



빠빠지게 일하면?
골빠지게 일하면?
죽도록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21



22



위험을 감수하는 현대사회

-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취하고 권장하는 사회
- 보다 빠르고, 크고, 복잡해지는 사회
- 위험은 개인이 취사 선택 할 수도, 컨트롤 할 수도 없어



55



한옥의 전통적인 아름다움



56

위험은 구조적인 문제

- 위험은 특수한 문제, 제거 대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 산업부문의 물적 시스템도 상당히 노후화
- 경제발전 · 성장위주 논리에 밀려 안전관리시스템은 부실
- 비정규직 · 외주화 등으로 안전관리 시스템, 인적 역량도 취약

17

여수산업단지, 가스 누출 하루 만에...또 '폭발 사고'

조회됨 기사입력 2018-08-19 07:07 | 최종수정 2018-08-19 07:23

여수산업단지 | 폭발 | 가스누출

07:

HOME > ARI > 지역포인

청주산단 폐수종말처리장 고농도 황화수소 누출...인부2명 실신

연현필기자 | 승인 2018.05.23 19:58 | 댓글 0

유해화학물질로 취급...1~2회 호흡만으로 사망

남동공단 화재 9명 사망...유독가스 번져 대피못해 희생 커(종합2보)

송고시간 | 2018/08/21 22:03

f t v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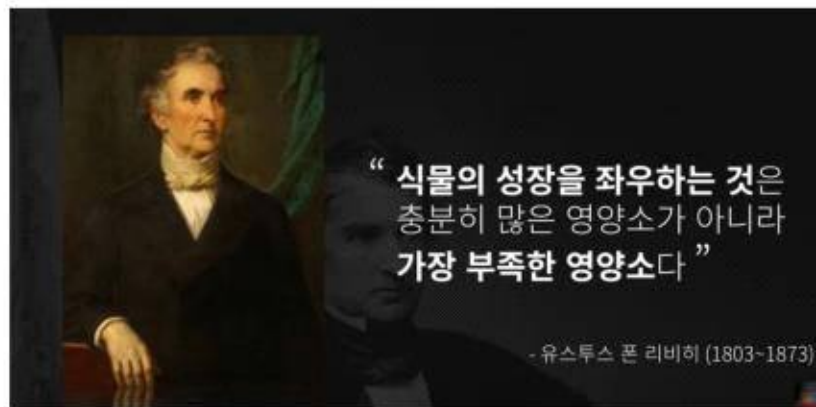
'최초 발화' 공장 4층서 사망자 7명 발견...여성 근로자 모두 4명 숨져

18

안전을 요구하는 사회로

- 사회가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사회
- 기업 · 사회가 위험관리를 하도록 해야 하는 사회
- 위험 사회 → 안전을 요구하는 사회로

19



20

리비히의 물통



21

안전이란



- 실수가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 것
- 사고가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



안전할 권리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할 권리

22

사업주 - '안전은 비용'



"스웨덴에서는 건설현장에서 떨어지거나 다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 노동자들이 고공에서 파이프에 두 발을 걸고 '작업'을 하는 경기도 성남시의 한 학교 건축공사장(위)과, 작업을 위해 계단과 통로를 광범한 구조물로 설치한 스웨덴 스톡홀름 외곽의 한 아파트건축공사장(아래). 남북이 같은 대형 현장은 바로 규모와 제도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경남=스톡홀름/특별취재팀 yew@hani.co.kr)

23



산업재해는 한 사람의 노동자만이 아니라 가족과 동료, 지역공동체의 삶까지 파괴하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24



안전은 권리입니다

25

노동자가 누릴 산업보건서비스의 원칙



보호와 예방의 원칙

건강 증진의 원칙

적응의 원칙

치료와 재활의 원칙

일차 의료의 원칙

26

예방과 보상

예방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 재해를 신중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를 신속히 재활시키고, 사회적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험을 실시하고, 그 밖에 재해예방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7

“산업안전보건법”은?

- 근로기준법 제 6장 ‘안전과 보건’ 10개 조항 규정이 신설
- 1961년 근로보건관리규칙, 1962년 근로안전관리규칙 제정
; 안전보건관리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틀 마련
-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 199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28

산업안전보건법 구성 및 체계



29

법체계상의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계층		효력성질	차별	심의	제개정
법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국회 법사위	국회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법규명령		형사 처벌	법제처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 · 위험작업의 취급제한에 관한 규칙				
고시, 예규, 훈령		행정명령	경제적 재제 (과태료)	노동부 법무관 실	
기술상의 지침, 작업환경표준					

30

1. 보호와 예방의 권리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요인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

노동자는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요인으로부터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31

무엇이 더 위험할까요?



32



33

일터의 유해요인



34

- 무엇이 위험한지.
- 내 일터에서 나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

안전보건 교육!을 제대로 실시해야

35

2. 건강 증진의 권리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건강)을
확대해야 한다.



노동자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확대하기 위해
노동환경을 바꿀 권리가 있다.

36

교대제 변화 : 주간연속 2교대 도입

주야맞교대 근무시간표				주간연속2교대 근무시간표			
주		야		전반조		후반조	
08:00~10:00	근무	19:00~21:00	근무	07:00~09:00	근무	15:40~17:40	근무
10:00~10:10	휴식	21:00~21:10	휴식	09:00~09:10	휴식	17:40~17:50	휴식
10:10~12:00	근무	21:10~23:00	근무	09:10~11:00	근무	17:50~19:40	근무
12:00~12:50	중식	23:00~23:50	중식	11:40~13:40	근무	20:20~22:20	근무
12:50~14:50	근무	23:50~01:50	근무	13:40~13:50	휴식	22:20~22:30	휴식
14:50~15:00	휴식	01:50~02:00	휴식	13:50~15:40	근무	22:30~00:20	근무
15:00~16:50	근무	02:00~03:50	근무			00:20~00:30	휴식
16:50~17:00	휴식	03:50~04:00	휴식			00:30~01:50	잔업
17:00~19:00	잔업	04:00~06:00	잔업				

10/10 → 8/8(9.5)

37

감정노동자 보호

다산콜센터 상담사 1인당 월평균
불쾌한 언행 경험 건수 ■ 남성 ■ 여성



다산콜 상담사 성희롱,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자료:서울시 인권위원회)

38

3. 적응의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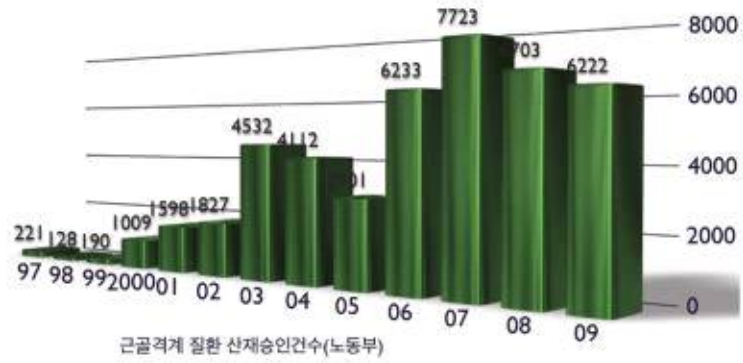
노동자의 능력에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을 맞추어야 한다.

노동자는
일에 자신을 맞추도록 강요받거나,
그럴 수 없다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상태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노동환경을 바꿀 권리가 있다.

39



40



41

근골 집단요양신청 : 라인을 바꾸다!!



Q 자동차 부품회사

42



43



44



이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카드뉴스] "고객님, 전화 끊었습니다." 머니투데이

43

4. 치료와 재활의 권리

유해요인, 사고와 상해 및
직업성 또는 직업관련성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를 최소화해야 한다.



노동자는
유해요인, 사고와 상해 및
직업성 또는 직업관련성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대로 된 치료와 재활을 요구하고
누릴 권리가 있다.

44

5. 일차 의료의 권리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작업장이나 가까운 보건시설에서
일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노동자와 그 가족은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작업장이나 가까운 보건시설에서
일반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다.

47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

- 1) 법에 따른 산재예방 기준을 지킬 것
- 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 3)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노동자에게 제공할 것


48

알 권리	• 법령요지의 게시(11조), 안전보건교육(31조), 작업환경측정 결과(42조) 등
보호받을 권리	• 안전상의 조치(23조), 보건상의 조치(24조) 등
참여할 권리	• 산업안전보건위원회(19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61조의2) 등
거부할 권리	• 작업중지(26조) 등
보상받을 권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49

산업

사업장 노동안전보건활동



- 노사 합동 안전점검(매월)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검진 (상, 하반기)
-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3년)
- 발암물질조사(2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분기별)
- 실무협의(매월)
- 산재상담 및 처리
- 노동안전 보건 일상활동
- 위험성 평가(1년)

※위험성평가는 2013년 6월 12일 산업안전보건법 41조의 2가 신설되고,
2014년 3월13일 시행됨

50

무엇이 더 중요한가



51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 루돌프 폰 예링 (1818-1892)

52



모든 이들의
안녕을 위해



[2]

알 권리로서의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산재보고

이성민

(공인노무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산업안전보건법

알 권리를 중심으로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목적
(원형법: 근로자)

“
산업안전보건법



정 부



노 동 자



사 업 주 등

3

“
알 권리



정 부



노 동 자



사 업 주 등

4

“ 알 권리

- ✓ 정보에 대한 접근, 수집, 처리할 수 있는 권리
- ✓ 자유로운 의사에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 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
- ✓ 다른 공법상의 권리 실효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역할과 활동을 지지하는 성격의 권리.

노동자는 안전 보건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음

5

“ 산업안전보건법과 알 권리



안전보건정보
제공의무



물질안전
보건자료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발생보고



작업환경
측정



경고표지



안전보건
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건강진단



공정안전
보고서

... (기타)

노동자는 안전 보건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음

6

“
산업안전보건법과 알 권리



물질안전보건자료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발생보고

노동자는 안전 보건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음

7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화학물질에 대한 제조사, 유해성, 위험성, 구성성분 취급상의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문서

개정 전

제 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등)

- ①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중 제 39조 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9

“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화학물질에 대한 제조사, 유해성, 위험성, 구성성분 취급상의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문서

개정 전

제 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등)

- ①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중 제 39조 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후

제 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 ①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제 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다량형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0조 시행일: 2021.1.16]

10

“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화학물질에 대한 제조사, 유해성, 위험성, 구성성분
 취급상의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문서

개정 전

제 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등)
 ③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1항 제 2호 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약제를 제조하거나 제조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
 람을 모두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의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
 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후

제 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①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물질로서 제 104조에 따른 분
 류기준에 해당하는 것(이하 "대상물질"으로 칭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대상"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
 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
 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
 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
 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 관
 리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1
 항 각호에 따른 자료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
 경된 경우 그 **변경 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0조 시행일: 2021.1.16)

“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화학물질에 대한 제조사, 유해성, 위험성, 구성성분
 취급상의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문서

개정 전

제 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등)
 ③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
 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근
 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대상화학물
 질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2. 제 1호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개정 후

제 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① 제 110조 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같은 항
 제 2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물질안전보건자
 료에 적지 아니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화학물질
 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이하 "대
 체자료"라고 한다)으로 적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8조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
 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의 대체 필요성, 대체자료의 적합성 및 물질안전보건자
 료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화학물질에 대한 제조사, 유해성, 위험성, 구성성분
 취급상의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문서

개정 전

제 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밀 등)
 1. 제 11조는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화학물질을 얻도이거나 취급하
 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정보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내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식별명'을 얻는 정보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상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다음
 화학물질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영업비밀로서 보호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2. 제 1호의 유해물질을 함유한 재제

개정 후

제 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업무·비밀 등)
 1. 제 11조는 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같은 항
 제 2호의 다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물질안전보건자
 오를 적지 아니하거나 작성·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화학물
 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이하
 "대체자료"라고 한다)으로 적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상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상업적
 영업비밀"인 경우, 제 2호의 다른 고용노동부장관령으로 정하
 는 정보의 일부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지하는 것은 그러
 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 1항 본문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의 대체 필요성, 대체자료의 적절성 및 물질안전보건자
 료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물질안전보건자료와 영업비밀

- ✓ 삼성 직업병 사건이 늘 그러했듯이, 이 사건 역시 많은 것이 은폐되기도 했다. 법원의 요청에 따라 삼성전자가 제출한 '물
 질안전보건자료'에는 성분 정보가 대부분 '영업비밀'로 감춰져 있었다. **어떤 제품은 성문의 90% 이상이 '영업비밀'일** 정
 도였다.
- ✓ 특히 삼성은 은주씨 동료들이 강조했던 또 다른 유해인자인 '세척제'에 대해서는 취급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법원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자 **"세척제를 사용한 적 없다"**며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 ✓ 동료들은 **'EN 4065', '8351C'**라는 이름을 기억했지만 삼성은 **'EN 4066'만을** 취급했다고 했다. 여기서 산업안전보건연구
 원의 대응은 간단했다. "근로자 쪽에서 진술한 제품들은 어느 사이트에서도 검색되지 않는다"며 삼성이 주장한 EN 4066
 에 대해서만 조사했다

임자윤의 반도체 소송기, 3부 은주씨의 접착제 중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문제

- ✓ 해당 물질은 **영업비밀**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
- ✓ 근로자가 해당 물질을 **직접 취급하지 않았다.**
- ✓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제품으로, **과거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
- ✓ 해당 물질은 안전하며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신청과 관련 없는 자료로 공개할 수 없다
- ✓ 업무상 재해 **조사과정에서는 해당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

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 노동자에 대한 **접근권**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음

15

“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화학물질에 대한 제조사, 유해성, 위험성, 구성성분
 취급상의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문서

의 미

- ✓ 사용자에게 임의로 맡겨두었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음
- ✓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행해진 비공개 부분에 대해 규율할 장치 도입
- ✓ 체계적 관리가 수반된다는 가정하에, 부 존재로 인한 자료제 공 거부는 줄어들 수 있음

한 계

- ✓ 물질의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 기재는 유해성 자료가 완전히 바뀌는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음
- ✓ 비공개 정보에 대해 노동자의 접근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음
- ✓ 비공개정보를 얻고자 할 때 정부가 아닌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요청하도록 규정되어있음

16

산업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교육종류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 고	
정기교육	사무직	매분기 3시간 이상	매년 반복적으로 실시	일반 직원 대상
	비사무직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 감독자 대상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	1회성 교육	일반 직원 대상
직업내용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	1회성 교육	일반 직원 대상
특별교육(위해 위험 작업)		별표 8의2 참조	별표 8의2 참조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4시간	건설일용근로자 대상	
관리감독자의 정기 교육은 해당년도 교육의 2분의 1범위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 시간의 3분의 2범위 이상을 집중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실시해야 함				

18

“ 산업안전보건교육: 사내 강사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3조제3항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 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7호 산업안전보건 교육 규정

제6조(근로자 교육강사기준)

규칙 제33조 제3항 제4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과 같다.

산업안전보건 교육 규정 별표1의 2호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교육 대상 직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9

“ 산업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은 노동자가 노출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위험과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을 권리로서 사용자 노동자에 대하여 실시해야하는 교육의 내용은 노동자가 담당하는 업무에 관해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며 단순히 안전보건 상 주의를 주는 정도의 것이라면 안됨

한 계 정

- ✓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 자체가 저조함
- ✓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이 실제 수행업무 및 산업현장과 상당한 거리가 있음
- ✓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한 법적 규제를 형식적으로 준수하기에 급급해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음

20

산업재해 발생 보고



“ 산업재해 발생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 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 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해(이하 "중대 재해"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 발생 보고

4일 이상 요양 → 3일 이상 휴업
요양신청서로 산재보고 같은 금지(2014.03 개정)

- ✓ 산업재해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 확보의 목적**
- ✓ 산재 발생 미 보고를 둘러싼 **보상 기간 또는 제도상 문제 해소의 목적**
- ✓ **원미간 재해는 정부 산재 예방 정책수립에 활용되지 않음**
- ✓ 휴업 일수에 재해발생일은 포함하지 않음 (부분 휴업도 포함되지 않음)
- ✓ 불연속적으로 3일 이상 휴업한 경우 산업재해 발생 보고 대상이 아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 목적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한 지점

2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가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을 제 1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4년 7월 1일 이후 처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한 때는 제 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 1항에 따른 보고 기한이 지난 후에 자진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법 제 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 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
2. 법 제 18조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주
3. 법 제 30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
4.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

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가 법률 제1185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 1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4년 7월 1일 이후 처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한 때는 제 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 1항에 따른 보고 기한이 지난 후에 자진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제2항 단서 적용 대상 사업주에 대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명령

산업재해를 은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 아닌지?

25

Q & A



[3]

거부할 권리로서의 산업안전보건법
- 도급, 작업중지권 등

조은혜
(돌꽃 노동법률사무소)

도급 건설 작업중지권

-산업안전법 전부 개정안을 중심으로-

돌곶노동법률사무소 조은혜 노무사

1

도급 건설 작업중지권

- 01** 도급 및 건설, 위험의 외주화와 산업안전보건법
- 02** 작업중지권, 노동자의 자기 안전 확보를 위한 권리
- 03** 질의 응답

2



OrinnNews

도급이란?

-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

제28조(유해작업 도급 금지)

- ① 안전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 중 때 지켜야 할 안전·보건조치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경우 제49조에 준하는 안전·보건평가를 하여야 한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6조(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

-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같은 사업장 내에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 1. 도급작업
 - 2.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 4. 그 밖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유해·위험업무 도급 금지(개정법)

✓ **도급금지 작업**

- 1. 도급작업
-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 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 **도급금지 작업의 예외**

- 1. 일시·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 2.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수급인에게 도급을 한 도급인으로서의 사업주를 말한다)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도급 승인(개정법)

✓ 도급 승인대상

"안전보건에 유해위험작업" -> "유해-위험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으로 변경

✓ 도급승인 기한 : 3년

- 기한 도과 이후 다시 평가하여 기간 연장 가능

✓ 도급 승인 시 재 하도급 금지

✓ 적격 수급인 선정의무

- 적격 수급인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처벌조항도 없음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

- '같은 장소'는 도급인이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의 개념이며, '사업'은 도급계약 관계에 있는 2개 이상 사업의 업무가 상호 연관되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이루는 경우를 의미함. 일회성 작업도 포함되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은 제외.

▶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

- 사업의 '전부'를 도급하여 주는 경우는 제외되고, 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의 전부를 도급으로 주는 경우를 명시하여 규정함.

도급 사업 시 안전·보건조치

- 1) 안전보건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2) 작업장 순회점검
-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 4) 작업환경측정
- 5) 경보 운영(발파작업, 화재발생 또는 토석 붕괴 사고 시) 및 경보 운영사항 통보
- 6) 안전·보건 시설의 설치
- 7) 정기적 또는 수시로 안전·보건 점검(근로자, 수급인,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 8) 화학물질 등에 대한 정보제공(미 제공 시 수급인이 정보제공 요청 가능)

✓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시행규칙 제2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① 법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3.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 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4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공사금액 120억원, 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은 노사협의체 구성 운영 가능

✓ **작업장의 순회점검**

시행규칙 제3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①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작업장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2.>

1. 다음 각 목의 사업의 경우: 2일에 1회 이상

- 가. 건설업
- 나. 제조업
- 다. 토사석 광업
- 라.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 마.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바.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2. 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 1주일에 1회 이상

② 수급인인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도급인인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화학물질 등에 대한 정보제공**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급하는 자가 해당 정보를 미리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직접 요청할 수 있다.

- 1.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

③ 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또는 독성 등의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나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 등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④ 법 제29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 1.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2.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안전시설 설치의무

1.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제하는 장소
5. 강성을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를 등·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급금지 작업을 하는 장소
9.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작업을 하는 장소
 - 가. 선막 내부에서의 용접·용단작업
 - 나.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용단작업
 - 다.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4호에 따른 인화성 물질의 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용단작업
 - 라. 가연물(可燃物)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식순도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10.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으로 되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장소
11. 석면이 함유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제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12.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13.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 장소
14. 공중 안전에 가까운 장소로서 사물물의 설치·해제·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5.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6. 프레스 또는 전단기(切断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7.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18. 안전보건규칙 제574조 각 호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19. 자립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자립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20.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21.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에 따른 양중기(揚重機)에 의한 중물 또는 철작(鉄作)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2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한다)에 의한 중물 또는 철작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현행법상 문제점

- 1) 원청의 안전조치 책임을 물으려면 같은 장소인지, 사업의 일부 도급(전문공사분야 전부 도급)인지, 22개 위험장소 인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해당되지 않으면 원청에게 책임을 묻지 못함. (ex- 태안화력의 경우 원청인 서부발전의 책임 없음)
- 2) 법 제29조 제1항의 '사업'을 '본래 사업과 그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는 업무'로 한정 해석하여 핵심업무가 아닌 경우 원청에게 책임을 묻지 않음
- 3) 원청이 별도의 장소를 지정하여 하청만 일하는 등 동일 사업장이 아니면 원청 책임 없음

개정법 - 원청 책임 강화

- 1) '도급' 정의 신설 -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 2) 원,하청이 같은 장소에서 일하지 않는 경우라도 도급인의 책임을 부여함(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경우 포함)
- 3) 동일 사업장의 경우 모든 장소에 대해 원청이 하청과 공동으로 안전조치 의무를 짐.
- 4) '관계수급인' 정의 신설
- 5) 도급인이 관계 수급인의 안전교육실시를 확인해야 하며, 안전·보건정보 제공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했는지도 확인해야 함
- 6) 화학물질을 이용하는 작업 시 원청이 정보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작업 연기가 가능하며, 지체책임이 면제 됨

고용부, 대형사고 위험 건설현장 77곳에 작업중지 명령

경민이 기사 | 입력 : 2019-01-20 10:26 | 수정 : 2019-01-21 10:29



고용노동부가 전국 건설현장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753곳을 집중감시하고, 이 중 사고 위험이 큰 77곳에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집중감시는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화재, 폭발, 절사과 같은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용부는 작업 발판 없이 노동자가 높은 곳에서 일하게 하는 등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작업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또 사고 위험을 방치한 건설현장 346곳의 안전관리 책임자와 법인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안전교육과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607곳에는 총 15억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분서를 즉시 개선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건설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된 건설현장은 690곳으로 집중감측 대상 사업장의 91.6%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964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506명이었습니다. 이 중 추락사고 사망자만 2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부는 재정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건설현장에는 추락 방지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공사 발주자 정의
신설 및 발주자 책임
강화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
계 설치·해체 등록 및
안전보건 조치

✓ 왜 발주자 책임을 강화해야 하나?

- 건설공사는 통상적으로 계획·설계·시공 등 건설공사 순 단계에서 발주자, 건설공사 도급인(시공자), 설계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리자)가 참여함. 그 중 발주자는 공사계획·설계·시공 등 건설사업 순 과정에서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을 결정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침(발주자가 공사 계획 후 설계자를 통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설계완료 후 시공자를 선정하여 작성된 설계도서에 따라 완공된 건축물을 최종 인수)
- 특히 설계과정에서 노동자의 안전문제가 고려되지 않거나, 공사기간을 적정하게 설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대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 따라서 안전보건문제에 대한 책임을 발주자에게도 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공사 계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에서 책임부여(위반 시 과태료 1000만원)

✓ **타워크레인 관련 개정법령 내용**

- 고용노동부 통계상 2013년~2017년 9월까지 발생한 타워크레인 관련 '중대재해'는 23건, 사망자는 31명
- 건설공사 또는 조선업에서는 타워크레인은 필수요소이고 최근 5년 간 타워크레인 사망사고 중 65.2%가 설치, 해체과정에서 발생
- 건설공사에서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설치·해체 업체는 영세 소규모 사업주가 대부분으로 안전관리 체계가 취약함. 따라서, 계약에 관계없이 건설현장 등 사업장에서 안전을 총괄·관리하는 건설공사 도급인(원청)이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의 설치부터 해체에 이르기까지 순 과정에 대하여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필요
- 타워크레인 조종작업, 설치·해체 작업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자격·면허 등을 가진 근로자가 작업하도록 규정. 그러나,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업체의 대부분은 영세한 개인사업자가 작업 시마다 그때그때 근로자를 모집하여 설치·해체작업을 수행하므로 숙련도가 낮고, 안전작업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로 인하여 다수의 산업재해 발생

2017년 타워크레인 사고현황

- 4월 21일 울산 엑스포홀 타워크레인 전도 1명사망, 4명 부상
- 5월 01일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 6명사망, 25명 부상
- 5월 22일 경기 남양주 현대힐스테이트 현장 타워크레인 전도 2명사망, 3명 부상
- 6월 15일 부산 해운대 숙맥시설현장 타워크레인 사고 2명사망, 3명 부상
- 10월 10일 경기 과천시 아파르트먼트 크레인 사고 3명 사망, 2명 부상
- 11월 09일 전주 완산 크레인 사고 2명 사망
- 12월 09일 인천 중구 오피스텔 현장 크레인 사고 1명 부상
- 12월 09일 경기 용인 불용센터 타워크레인 전도 3명 사망, 4명 부상

- 건설공사의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작동되고 있는 경우나 이를 설치·해체·조립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함.

- 타워크레인 설치 또는 해체하려는 자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고 사업주는 미 등록자에게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작업의 도급을 할 수 없음

✓ **공사기간 단축 금지,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 요청(현행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①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6.12.>

1.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할 것
2.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

제29조의3(설계변경의 요청)

① 건설공사의 수급인(해당 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건설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를 발주한 도급인(설계를 포함하여 도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수급인이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전문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4(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①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그의 수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도급하는 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요청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위생시설 등의 설치**

시행규칙 제30조의6(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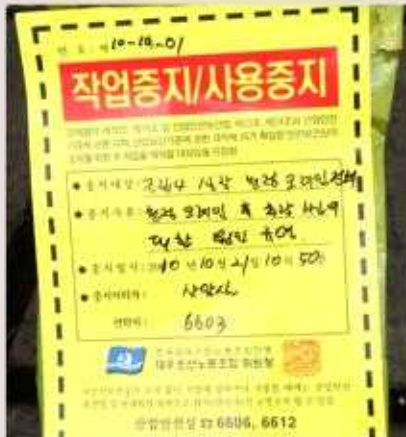
법 제29조 제9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말한다.

1. 휴게시설
2. 세면·목욕시설
3. 세탁시설
4. 탈의시설
5. 수면시설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1억원 이상)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작업중지권이란?**

-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중지할 권리
- 노동자가 작업 중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
- 현행법상 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할 위험이 있을 때 또는 ②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음

※ **중대재해란?**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or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or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현행법

제26조(작업중지 등)

-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으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근로감독관과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제4항의 원인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의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현행법에서는 작업중지 시 위험발생에 대한 합리적 판단 주체와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었으나, 개정법에서 근로자가 판단 주체임을 명확히 함**
- ✓ **그러나 여전히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남아 있고,**
- ✓ **작업중지/대피를 한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처우 금지' 규정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되지 않았음.**

회시번호 : 산안 68320-249, 회시일자 : 2001-06-13

[질 의]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및 중대재해 발생의 정확한 용어 정의는?

[회 시]

사업장별로 유해·위험요인 및 작업의 조건과 상황이 일정하지 않고, 또한 수시로 변함에 따라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구체적인 범위를 법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므로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판단기준은 각 개별 사안에 따라 당시 상황의 유해·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급박한 위험'은 유해물질의 누출, 질식 또는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경우, 압력용기의 압력 급상승으로 파열·폭발이 예상되는 경우 등과 같이 객관적·개별적으로 보아 위험이 곧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어 즉시 대피하지 않으면 작업중인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가해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안전과 보건에 즉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믿는 것에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단체협약 등에서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급박한 위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현행법

제51조(감독상의 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제6항에 따른 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위험 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트사·구축물의 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해제의 요청 절차 및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현행법에선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도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명령을 할 수 있으나, 개정법에선 삭제됨

23

✓ 작업중지권 사례 - H자동차 소재공장 작업중지 사례

2014년 4월 21일 H자동차 소재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다. 소재부 용해라인에서 용융고열물을 옮기는 레들이 파손되었다. 레들이 파손되는 경우 피트(병커)에 레들을 부어서 식혀서 버리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피트를 평소엔 관리하지 않아, 피트 내에 물이 고여 있었던 것이다. 6분 정도 찻물을 부었더니 피트 내 에 고여 있던 물이 기화하면서 폭발했다. 회사측에서는 용해로 4개 중 4호기에서 사고가 났으니 나머지 3개 용해로는 출방을 하겠다고 요구했다. 출방을 중단하면 찻물이 그대로 굳어버리게 되어 막대한 손실이 생기기 때문이다. 소방관은 폭발로 인해 위험하고, 안전도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용해로 찻물도 옮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의원이 방송으로 라인에 있는 인원 모두에게 당장 대피하도록 했다. 소재공장은 작업환경이 위험하여, 2차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큰 사고라고 판단해서 임시산보위가 소집되었다. 노조 신고로 근로감독관이 현장점검을 나와, 바로 작업중지명령을 붙이고 갔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팩스로 사고 난 4호기 빼고는 작업하라고 연락이 오고, 사측에서도 구사대 50명을 동원해 작업에 나서지 않으면 지시불이행과 무단이탈로 징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우왕좌왕하는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은 작업 중지를 지속하라고 했다. 안전확인이 되기 전에 그대로 일할 수는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었다. 조합원들이 조합 지침에 따라 작업에 나서지 않은 것이 큰 힘이 되었다. 결국, 3일 동안 작업을 멈추고 현장 점검을 했더니,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다른 피트도 모두 지하수가 고여 있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의에 따라 용기보수, 비상벨 설치, 안전시설 추가설치와 외부기관 안전실사까지 시행했다.

02 작업중지권

✓ 작업중지권 사용하면 업무방해? 손해배상 청구?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자 노안부장 안 모씨가 현장 점검 중 자동차 공조기 부품 로봇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멈춰있는 것을 발견해 안전장치 확인 시 작업중지 요구
- 작업 노동자가 주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로 로봇 펜스 안에서 불량제품을 꺼내는 과정에서 다른 노동자가 펜스 문을 건드려 닫힐 뻔 한 상황이었음. 펜스 문이 닫히면 로봇이 스스로 작동할 상황
- 노사는 6시간 동안 작업 중단하고 특별안전보건교육, 특별 안전점검, 특별안전보건 교육 허위 작성 해당자 징계 등에 합의
- 1달 후 사측은 노조가 라인을 세우는 작업중단까지 요구한 것은 과도했으며, 라인 정지로 고객사 납품에 문제가 생겨 손실금액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화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함



27

03 강의 마무리

✓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8

-END-

돌곶노동법률사무소 조은혜 노무사

honestcpla@gmail.com

29

[4]

참여할 권리로서 산업안전보건법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체제

이진아

(이산 노동법률사무소)

참여할 권리로써 산업안전보건법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 관리체제

이산노동법률사무소
이진아 노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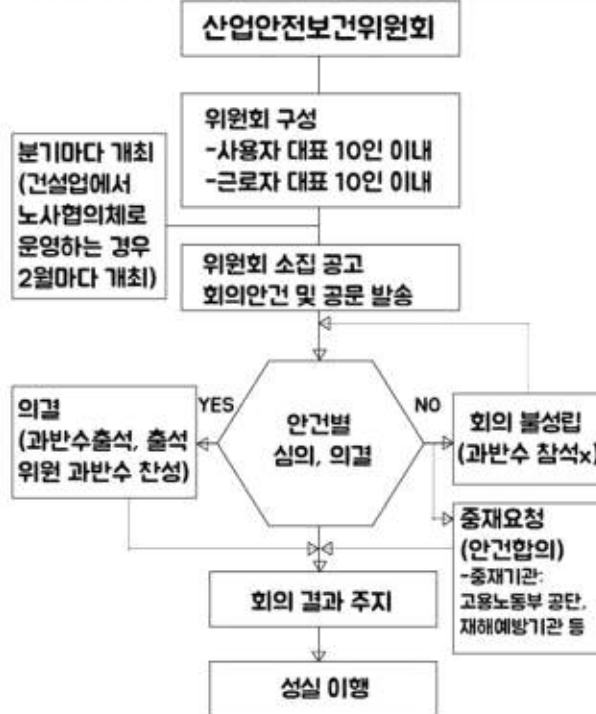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역할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과 건강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 *상시 1,000인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 -노사협의회로 갈음 가능
자격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유해·위험 업종으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은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구성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 시 개의, 출석위원의 과반수 동의로 의결 (근로자위원) 3명~10명(노사동수원칙) ①근로자대표(과반노조 有 - 노동조합의 대표자, 과반노조 無 - 과반 근로자 대표하는 사람) ②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산관 ③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산관 외)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사업자위원) 3명~10명(노사동수원칙) ①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②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 위탁 시 해당 사업장 담당자) 1명 ③보건관리자(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 위탁 시 해당 사업장 담당자) 1명 ④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⑤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심의 · 의결	①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④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3

생각해보자!

1. 근로자대표로 단위노조 위원장이 참여할 수 있을까?

지역노조지부장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 A건설의 경우 공사비 120억원 이상의 단위공사에 3~4개 하도급사를 두고 있고, 동 하도급사(전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지역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바
- 지역노조지부장이 위 공사현장과 고용종속관계는 없으나, 노동단체의 대표이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 현장근로자의 과반수가 노조에 가입하고 있으나, 동현장 노조가입 근로자만으로 지역지부 노조의 과반수를 이루는 것은 아님

회사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정의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함
- 사용종속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에 계속적으로 사용자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그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를 말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야 할 것임
- 따라서 당해 근로자의 대표자인 지역노조지부장이 질의내용과 같이 당해 공사현장과 고용종속관계가 없다면 당해 공사현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자위원 자격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
(안전보건정책과-317, 2008.06.09.)

4

(단위: 명, %)

업종	분류	구분	빈도 (%)	분류	구분	빈도 (%)
제조업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심의 및 의결 기구 (n=269)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211 (69.8)	위원 (n=281)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176(91.1)
		노사합의회로 대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143 (89.2)	위원 (n=109)	사용자위원으로 참여	124 (69)
		노사합의회로 대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143 (89.2)	위원 (n=109)	참여하지 못할	80 (50)
		노사합의회로 대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143 (89.2)	위원 (n=109)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92(71.3)
		노사합의회로 대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143 (89.2)	위원 (n=109)	사용자위원으로 참여	21(5.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합의회 모두 설치 및 운영되고 있지 않음	11 (3.0)	이유 (n=9)	참여하지 못할	28(32)	
	사업주의 반대 또는 무관심	3(33)	사업주의 반대 또는 무관심	3(33)		
	노동조합의 무관심	1(11)	노동조합의 무관심	1(11)		
	해당 제도가 있는지 불확시	2(22)	해당 제도가 있는지 불확시	2(22)		
	기타	1(11)	기타	1(1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심의 및 의결 기구 (n=139)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	108 (66.7)	위원 (n=108)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89(78.3)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	108 (66.7)	위원 (n=108)	사용자위원으로 참여	21(19)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	108 (66.7)	위원 (n=108)	참여하지 못할	2 (1.9)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와 협의체로 대체 설치되어 운영	11 (8.7)	위원 (n=11)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7(70)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와 협의체로 대체 설치되어 운영	11 (8.7)	위원 (n=11)	사용자위원으로 참여	1(10)
	공정안전보건협의회 또는 기타 협의체로 대체 설치되어 운영	4 (3.2)	위원 (n=4)	참여하지 못할	2(20)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3(75)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3(75)		
	사용자위원으로 참여	0	사용자위원으로 참여	0		
	참여하지 못할	1(25)	참여하지 못할	1(25)		
	사업주의 반대 또는 무관심	1(25)	사업주의 반대 또는 무관심	1(25)		
운수업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심의 및 의결 기구 (n=117)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33 (72.9)	위원 (n=33)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15(789)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33 (72.9)	위원 (n=33)	사용자위원으로 참여	21(97)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33 (72.9)	위원 (n=33)	참여하지 못할	2(9)
		노사합의회로 대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75 (92.4)	위원 (n=73)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44(929)
		노사합의회로 대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75 (92.4)	위원 (n=73)	사용자위원으로 참여	23(31.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합의회 모두 설치 및 운영되고 있지 않음	24 (20.7)	이유 (n=17)	참여하지 못할	4 (5.7)		
사업주의 반대 또는 무관심	3(17)	사업주의 반대 또는 무관심	3(17)			
노동조합의 무관심	2(11)	노동조합의 무관심	2(11)			
해당 제도가 있는지 불확시	9(52)	해당 제도가 있는지 불확시	9(52)			
기타	3(17)	기타	3(17)			

생각해보자!

2. 명예산업

제조업의 경우
응답자(201명)의 89.1%
건설업의 경우
응답자(106명)의 78.3%
운수업의 경우
응답자(19명)의 78.9%가

했다. O? X?

지 못한 경우 5%

지 못한 경우 1.9%

지 못한 경우 10.5%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일종의 취업규칙, 사업장의 취업/단협에 위배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필수 기재 사항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절차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의 불이익변경 시 절차 생각해보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명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노사 단체 등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함. (95.07 행정지침으로 도입, 96.12 법제화)
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대	(대상) 사내 및 사외에서 위촉 (사내) 산보위/노사협의체 설치 대상사업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사외) ①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②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③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업	자체 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에의 참여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 참여 및 안전검사 임회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 신고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 중지 요청 작업환경 측정·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임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직업성 질병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 다수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 정책 개선 건의 (사외만) 안전보건교육의 고취를 위한 활동 및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사외) 그 밖에 산재 예방에 대한 홍보·계몽 등 산재 예방업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 (사외)
활	(수당지급) 고용노동부 장관은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음 (의무 아님) (협의회 운영) 장관은 업무 활성화 위해 지역별·업종별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 (교육 실시) 장관은 재해 예방활동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 (불이익 처우 금지) 사업주는 정당한 활동 수행을 이유로 불이익처우 금지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한 조치) 소속 사업장의 법령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한 경우 신속처리 (혜택 부여) 산재 예방 활동에 공 세운 명산관은 해외 연수, 국내 산업 시찰 및 유공자 정부 포상 추천

생각해보자!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시간 확보 방안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자주성

2014년 전국급속노동조합 모범단협안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 회사는 조합의 자발적인 재해예방업무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를 활성화한다.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조합원 대표가 추천하는 당해 사업장 조합원으로 한다.
3. 회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요청하는 활동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예상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작업중지를 명하고 작업자를 대피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회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업무에 필요한 노동안전보건 교육수강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적극 보장하며 비용을 지급하고, 교육 참여 소요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6. 회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등을 이유로 승진, 승급 등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조합의 동의 없이 해고 등 어떠한 징계도 할 수 없다.

생각해보자!

3. 명산관 법적 한계

->노동부 근로감독관 부족으로 예방이 되지 못하고 사고 발생시 조치로 되어버리는 문제

->철도의 경우 지부 등이 전국으로 산재되어있으면 100인 이상일 시 지부별 명산관 선임 가능하도록 함

->학교 급식노동자 경우 공공행정으로 분리되기는 하나 주된업무와 독립적으로 분리되어있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산안법 적용을 받도록 하는 지침을 끌어냄.

9

5. 위반시 조치사항(법 제72조제2항, 영 별표 13, 집무규정)

제24: 1항 사 용자위 2항 사 -안전 -유해 -그밖 3항 소 여 보: 4항 사 5항 소 용으 6항 사 7항 소 의결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위반 ①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방침 위반 포함):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 시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②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1회당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③ 등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1회당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나 다. 바 내 닐 10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정사항 불이행 ① 20일 이내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사업주 300만원, 근로자 10만원) 및 행정조치 병행 ※ 사업장 감독 및 조사대상 재해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집무규정 제36조제2항)	
	※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 위 금액에 규모별 비율(영 별표 13 제2호)을 곱한 금액을 부과금액으로 하되,	
	② 최근(1~3년간) 법위반으로 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감경 가능(집무규정 제37조)	
	최근 1년 이내 산안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된 사실이 없는 경우 : 부과기준금액의 10%	
	최근 2년 이내 산안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된 사실이 없는 경우 : 부과기준금액의 30%	

사업장 혹은 지부 안전보건관련 합의안

- 금속 00지회 산보위 합의안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산업의학 전문의 소견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자가 산재 요양신청 후 불승인 판정 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근태는 정상으로 처리 한다. 단)재 요양 및 동일부위 제외
- 금속00지부 교섭 합의안 : 지부산하 지회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전 지회 특별안전보건교육 시행 의무화
- 금속00지부 교섭 합의안 : 사용자는 조합원의 업무상 재해 발생시 산재 요양신청에 최선을 다하며,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 20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 의견서 제출시 이를 조합과 협의한다.

경주지부 2017 단협 합의안 중 제 9 장 노동안전 보건

제 48 조[노동안전보건]

- ① 노동자의 안전 확보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게 있으며 회사는 노동자의 안전 확보와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② 회사의 최선의 노력에 따른 안전 확보 상태란 위험이 없는 상태이거나 위험요인이 있더라도 노동자가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세워져 있고 그런 사실이 확인된 상태를 말한다. 단지, 재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안전이 확보된 상태라고 할 수 없으며, 잠재위험 예측을 기초로 대책이 수립되어 있어야만 안전이 확보된 상태라 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해 노동자에게 사고나 질병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잠재적 위험요인에 의해 노동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잠재 위험을 예측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④ 회사는 예산, 인력, 제도 면에서 안전보건의 최우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안전제일의 원칙이 경영의 어떤 원칙보다 우선해야 한다.

제 49 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합과 회사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단, 사업장이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며, 인원수는 사업장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한다.
- ② 위원회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양측 간사 중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을 시 임시회의를 7일 이내에 개최한다.
- ③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합의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단, 회사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노동부의 감독상 조치에 대하여 즉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하고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왕래가 빈번한 식당, 휴게실 등에 1주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회사 내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회사는 감독상 조치에 대한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 ⑤ 회사는 조합비전임위원이 회의준비 및 회의 참석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재반사항은 별도 운영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13

제 51 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① 회사는 조합이 자발적인 재해예방업무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를 활성화 한다.
- ② 조합은 회사의 의견을 들어 관할 노동관서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며 사업장이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도 추천한다.
- ③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업무수행을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요청한 활동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행한 작업중지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된다.
 1.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2. 중대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 ④ 회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업무에 필요한 교육수강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적극 보장하여 비용을 지급하고 그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 ⑤ 회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등을 이유로 승진, 승급 등 일체의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되며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해고 등 어떠한 징계도 할 수 없다.

14

안전보건관리체제

< 안전보건관리 체계 >



15

안전보건관리체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도급사업)
역할	사업주에게 권한을 위임 받아 산업안전보건업무 총괄/관리	도급사업에서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할 시 총괄/관리
자격	대표 상주-대표 대표 비상주-사업경영에 실질적 권한 가진 자 (공장장, 지점장, 사업소장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뒤야 하는 사업-관리책임자 의무 아닌 사업-해당 사업장의 사업 총괄/관리자
선임의무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전 사업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①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의 건설업 ② 상시근로자 50명이상100명미만 지정사업들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사업 일부 분리해 도급하는 사업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 제1차금속제조업, 토사석광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00명 이상 제조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제조업 건설업 :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수, 공사금액 모두 도급사업장 포함)
직무	*총괄·관리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관련 안전장비/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휘·감독 :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로서의 직무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업무 총괄·관리 - 작업 중지 및 재개 -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 조치 -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 간의 협의·조정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사용여부 확인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16

안전보건관리체제 -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역할	사업장 내 부서단위에서 산업재해 활동을 위해 경영 조직상 업무의 지휘 계통에 있는 상급자로 하여금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자격	- 경영조직에서 작업과 관련해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하는 감독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보통 부서의 장
선임의무	별도의 선임 등의 행정 처리가 없더라도 그 직위는 당연히 관리감독자이며 직무와 책임을 동시에 수반. (ex. 프레스반장, 생산과장·부장 등 단위 공정 또는 작업의 책임자)
직무	- 해당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작업장 정리·정돈 및 동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산업보건의·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위험성평가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시행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7

안전보건관리체제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역할	관리책임자의 직무 중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해 이에 대한 지도·조언하며 보건(안전)관리자와 협력 통해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자격	안전지도사, 산업안전기사 이상, 건설안전기사 이상, 관련학과 전공자 및 타 법령에서 인정받은 자 등의 일정 자격을 갖춘 자	산업위생지도사,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 환경관리(산업)기사 이상, 산업보건·산업위생 전공자, 보건위생 관련 학과로 해당 학과목 12점 이상 수료 등의 일정 자격을 갖춘 자
선임의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두어야 하는 의무를 진 사업주 외의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 안전보건에 관해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선임의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 제외)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전담) ①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②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토목150억원)이상 -(안전업무 위탁)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사용 (건설업은 제외)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 제외) -(전담) ①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②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토목150억원)이상 -(보건업무 위탁)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사용 (건설업은 제외)
직무	-위험성평가·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안전에 관한 사항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MSDS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직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 건의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18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조정자	
역할	건설공사 분리발주할 시, 한 현장에 다수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노동자들이 혼재해 작업을 하게 됨. 이 때 발주자에게 시공자들간 안전보건문제 조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해 안전보건조정자 두도록 함.
배경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
의무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발주자가 선임 또는 지정해야 함.
직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발주된 공사간 혼재 작업 파악 - 혼재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 작업간 간섭을 피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 내용 및 안전보건조치 등의 조정 - 각 도급인의 관리책임자간 작업에 관한 정보 공유의 확인
산업보건의	
역할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
대상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으로서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를 두는 사업장 (위탁 가능)

19

생각해보자!

1. 2017년 산재사고의 80%이상은 50인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났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역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위탁 가능)
배경	50명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미흡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016년 1월 신설. 3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18.09.01부터, 20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은 2019.09.01부터 시행
업종	제조업, 임업, 허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 갖춰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자의 자격 갖춘 것 - 보건관리자의 자격 갖춘 것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겸업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역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3.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4.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6.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20

생각해보자!

2. A사업장의 노동조합 노동안전부장과 상담을 하게 됐다. 보건안전관리체제 관련 어떤 질문들을 해볼 수 있을까?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있는지.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겸임인지. 겸임이라면 무슨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지
- 고용노동부에 보고는 되어있는지
-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 안전보건 실태와 개선사항 관련 설명회를 한 적이 있는지

3. 현재 산안법 안전보건체제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가장 큰 책임을 지는 자는 누구일까?

4. 사례) 중장비 정비업무 사업장에 어깨 회전근개 파열
산재 현장조사를 나갔다. 현장조사 직후 안전관리자는
공단 직원에게 이 사업장은 전혀 산재가 일어날리 없는
곳이라고 돌려댔다. 이를 들은 당신. 어떻게 할 것인지?

21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

산보위

- 적극 설치, 위원 최대수 확보
- 도급업체 근로자 대표와 수급업체 근로자 대표의 합동안전점검

명감

- 적극 위촉
- 지역명감은 산별이나 중연맹 수준에서 적극 확보 및 활동력 극대화
- 명감 교육시간 극대화를 위한 활동 계획표 작성

노사 협약회

- 산보위와 병행 운영
- 고충처리위원 확보

기타

- 근골격계질환 추진 팀 활동 연중 가능
- 건설업종 노사협약회 적극적연 가능
- 보건의료 분야 감염관리위원회에 노동자 참여

22

참여할 권리로서 산업안전보건법

권리를 행사할 때에 비로소 법이 의미 있어집니다.

감사합니다.

[5]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열쇠

－ 작업환경측정, 역학조사, 건강검진

권종호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특수건강진단, 작업환경 측정, 질판위 등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한노보연 회원 권증호

차 례

1. 제도의 성립
2. 특수건강진단
3. 작업환경 측정
4. 질병 판정 위원회 및 역학조사

1. 제도의 성립

문 송 면

이름: 문송면(文松勉)

출생: 1973년 2월 14일 충청남도 태안군

사망: 1988년 7월 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직업: 근로자

학력: 태안중학교 졸업

가족: 6남매 중 넷째



문 송 면



"집안이 어려워 고등학교에 갈 수 없다. 하지만 친구들과처럼 나도 공부하고 싶다. 산골에서 농사지며 뼈빠지게 고생만 하시는 부모님! 자식 공부 못 시키는 우리 부모 맘이 오죽할까. 서울에는 고등학교 공부시켜주는 공장이 있다던데..."

..문송면의 일기 중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협성계공의 광고를 본 문송면은 공장 상경을 결심했다. 중학교 졸업을 하기도 전인 87년 12월 5일 그가 입사한 협성계공은 온도계를 만드는 공장이었다. 액체 수은이 깔렸고, 수은증기가 그득한 작업장에서 그는 직접 수은을 온도계에 주입하는 일을 맡았다. 그러나 일을 시작한지 한 달이 조금 넘은 시점 이상 증후가 나타났다. 불면증, 식욕감퇴, 발열, 두통, 시간이 갈수록 새로운 증상이 더해졌다.

5

문 송 면



산업재해신청을 시작했다. 산재신청을 위한 진단서에 적힌 문송면의 병명은 '수은중독증'과 '유기용제(신나) 중독증' 추정 두 가지였다.

산재신청을 접수한 노동부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는 산재신청 서류를 반려하거나 시간을 끌었다. 사업주 날인이 없고 초진진단기관인 서울대병원이 산재보험 미지정 의료기관이라는 이유였다.

1988년 5월 11일자 <동아일보>에 '온도계 공장에서 일하던 15세 소년이 두 달 만에 수은에 중독'됐다는 기사가 실렸다. <동아일보>를 시작으로 언론 보도가 되면서 주변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문송면 군의 문제가 사회에 알려지자 양심있는 지식인, 의료인, 노동자들의 공감이크거졌고 노동부도 마지못해 문송면의 수은중독을 직업병으로 인정했다. 1988년 6월 20일이었다.

6

문 송 면

사망: 1988년 7월 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원진 레이온

1964년 : 박흥식이 일본 동양레이온의 중고 기계를 들여옴.

1966년 : 흥한화학섬유 공장 준공

1972년 : 동선화학(東鮮化學)에 인수, 세진레이온으로 사명을 변경

1976년 : 원진산업(源進産業)에 인수, 세진레이온에서 원진레이온
으로 사명을 변경

1979년 : 한국산업은행의 법정관리

1993년 : 폐업

원진 레이온



1988년 7월 15세 소년인 문송면 군이 수은중독증으로 사망하면서 직업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7월 17일에는 산업재해노동자장이 열렸다. 이어 **7월 22일 한겨레신문**에서 그 한 해 전에 진상 조사를 요구했던 **원진레이온 퇴직 근로자 4명의 비참한 상황(요양치료 후 재요양을 받지 못하여 경제적 곤란에 빠짐)**이 보도되면서 원진레이온에 근무했던 사람들 중 비슷한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원진레이온 직업병 피해자 및 가족협의회(원가협)'**를 만들었다.

1989년 이전은 직업병자수가 35명이었으나 1990년 34명, 1991년 25명, 1992년 113명, 1997년 84명, 1998년 71명, 1999년 45명, 2000년 27명, 2001년 28명이 진단을 받았다. **2008년 말까지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950여 명이 진단**받았다.

9

총론



노동자 건강권의 측면에서 **1988년**은 문송면의 죽음과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증 집단 발병을 통해 어린 학생이 불과 몇 달 만에 수은 중독으로 목숨을 잃고, 10년 이상 일을 해 온 40대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장애인이 되어버린 **충격적인 노동 현실이 알려진 해**였다.

이에 따라 **1991년 5월** 학계·의료계 및 정부 관계자 20여 명으로 직업병 예방대책 추진 기획단을 구성하여 **같은 해 6월 직업병 예방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발표하였다. 종합대책의 기본적 바탕은 정부 차원의 특별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직업병문제가 앞으로 견잡을 수 없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10

종합대책의 개요



근로자 건강관리의 내실화

사업장의 보건관리 체계를 자체 보건관리자에 의한 1 차적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자 함

작업환경관리의 전문성 제고

유해물질에 대한 근원적 관리를 위하여 석면 등 직업병 유발 물질에 대한 제조·사용 허가제를 실시하고,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 제도를 도입

직업병 판정 및 치료의 합리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서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 변경

11

종합대책의 개요



산업보건 전문기구 및 인력 확충

직업병 연구기관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연구원을 설립, 산업의학 전문의 양성과정을 신설하고, 산업위생기사 양성을 확대(학과 및 교과목 증설)하며, 일반 간호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산업보건인력으로 전환함으로써 산업보건 전문인력 양성 체제를 구축

직업병 예방 홍보 및 교육 강화

12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1995년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1996년에 첫 전문의를 배출하였다. 2011년 3월 대한산업의학회가 대한직업환경의학회로 학회명을 변경하면서 산업의학 전문의이라는 명칭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 변경되었다. 직업환경의학 전공의 수련병원에서 4년간의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였을 때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직업환경의학 전공의 수련기관은 34개가 있다.

13

1. 제도의 성립
2. 특수건강진단

산안법 상 특수건강 진단



제43조(건강진단)

-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임회시켜야 한다. <개정 2010. 6. 4.>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중략)

15

산안법 상 특수건강 진단



제43조(건강진단) <계속>

- ④ 건강진단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 ⑤ 사업주는 제1항·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중략)
- ⑥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종류·시기·주기·항목·비용 및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관리, 제2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제5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 그 밖에 건강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 실무지침

16

산안법 상 특수건강 진단



제43조(건강진단) <계속>

- ㉓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지도·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6. 4.>
- ㉔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건강진단기관 중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평가(제9항에 따른 평가를 포함한다)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및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17

실무지침



1997년 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을 중심으로 특수 건강진단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의 특수건강진단제도 전반(건강진단 대상, 항목, 주기, 진단방법, 건강관리기준, 수가)을 그 운영 실태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특수 건강진단제도를 새롭게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 결실로 1998년 특수건강진단제도 개선연구결과 보고서(보건분야-연구자료 연구원 99-50 -120)가 만들어졌고, 연이어 유해인자별 건강진단방법 세부지침개발이 이루어졌으며, 1999년에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보건기술자료 연구원 99-93-375)이 빛을 보게 되었다.

.....

2013년 4번째 개정판에서는 야간작업이 특수건강진단의 항목으로 추가됨에 따라 실무지침에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의 건강진단 방안과 주의사항 등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다.

18

실무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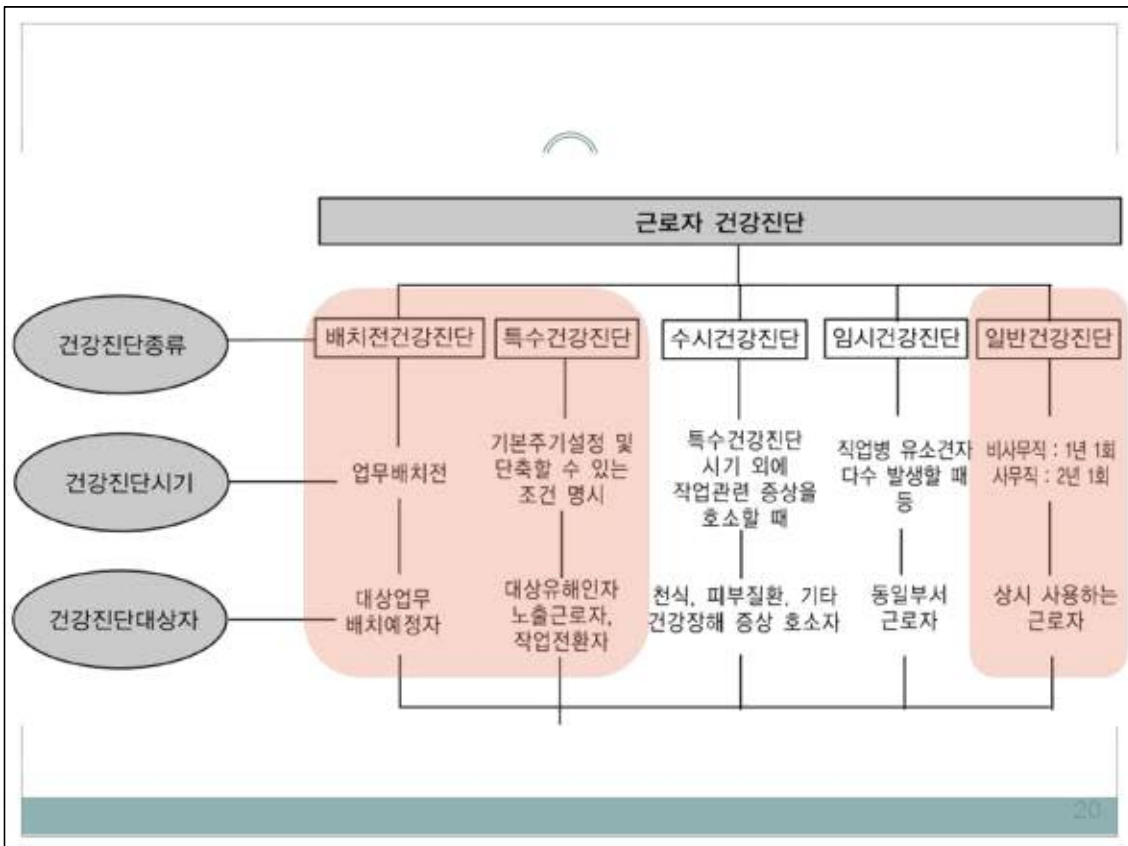
근로자 건강진단에 대한 개요 안내를 내용으로 하는 제1권과

유해인자별 건강진단방법에 대해서만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제2권 및

유해인자의 물리·화학적 성질에서부터 건강장애에 이르기까지 충실한 참고서의 역할을 해줄 제3권 등을

세 권의 별개의 책자로 구분하여 편집함으로써 이용의 편리함을 추구하였다. 또한 제3권의 관련정보 편에서는 그 밖에 궁금한 것을 더 자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참고문헌을 제시하였다.

19



20

표 1 |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 기	주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먼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나무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21

화학적 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화합물(108종) ○ 금속류(19종) ○ 산 및 알칼리류(8종) ○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물리적 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및 충격소음작업에서 발생하는 소음 ○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4호의 진동 작업에서 발생하는 진동 ○ 안전보건규칙 제573조제1호의 방사선 ○ 고기압 ○ 저기압 ○ 유해광선
분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물성 분진 ○ 곡물분진 ○ 먼 분진 ○ 나무분진 ○ 용접 흄 ○ 유리섬유 ○ 석면분진
야간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22

[별표 13] <개정 2017.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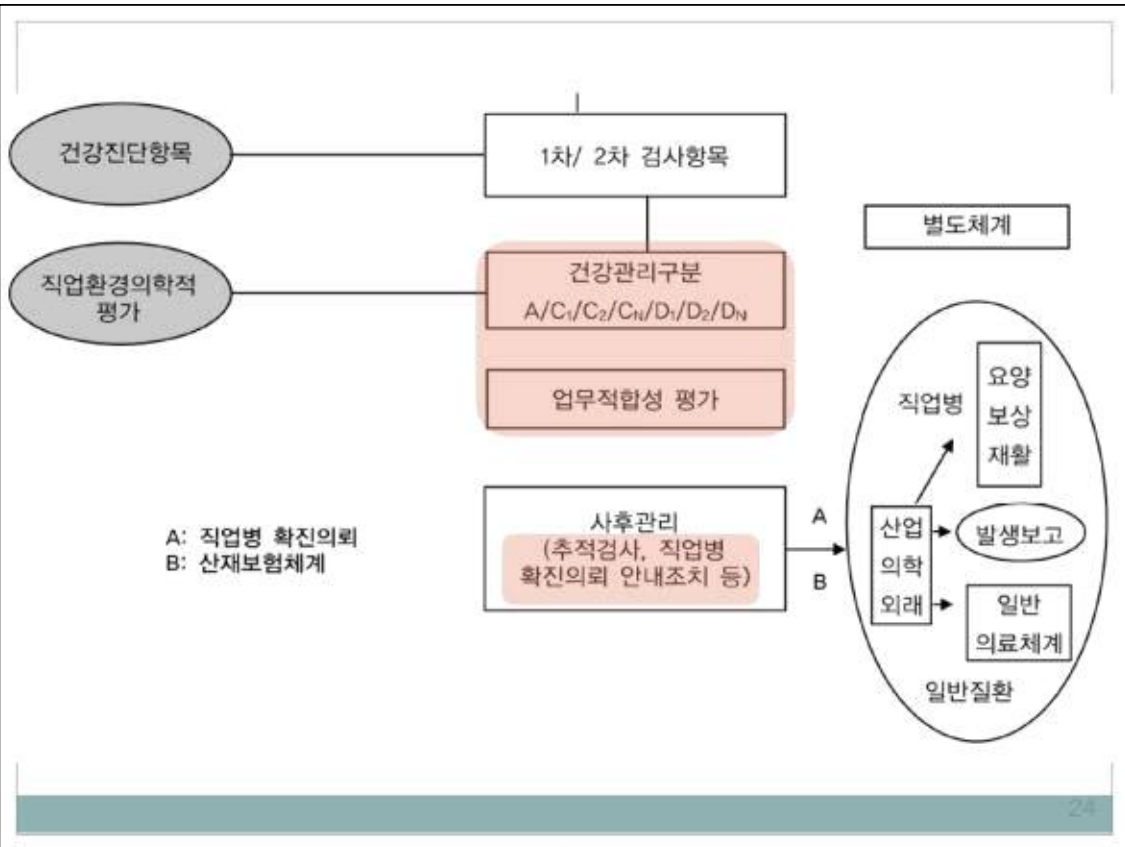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제100조제4항 관련)

1.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가. 화학적 인자

1) 유기화합물(108종)

번호	유해인자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1	가솔린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피티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피티,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카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23



24

주1) 건강관리구분 판정

건강관리구분	건강관리구분 내용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C	C ₁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요관찰자)
	C ₂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요관찰자)
D1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유소견자)
D2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유소견자)
R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 ※ "U"는 2차 건강진단대상임을 통보하고 10일을 경과하여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근로자, "U"로 분류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 기한 내 미실시 등 2차 건강진단의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표의 사후관리소견서 검진소견란에 기재하여야 함
- ※ 건강관리구분 "A"란 건강진단결과, 이상소견이 전혀 없거나 경미한 이상소견은 있지만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자를 말함

건강관리구분 판정(야간작업)

건강관리구분	건강관리구분 내용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C _N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질병 요관찰자)
D _N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질병 유소견자)
R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 ※ "U"는 2차 건강진단대상임을 통보하고 10일을 경과하여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근로자 "U"로 분류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 기한 내 미실시 등 2차 건강진단의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를 규칙 제105조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표의 사후관리소견서 검진소견란에 기재하여야 함
- ※ 건강관리구분 "A"란 건강진단결과, 이상소견이 전혀 없거나 경미한 이상소견은 있지만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자를 말함

주2) 업무수행 적합 여부 판정

구분	업무수행 적합여부 내용
가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나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보호구착용, 건강진단주기의 단축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다	건강상태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해결된 후 작업복귀 가능)
라	건강상태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애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 ※ 업무수행 적합 여부 판정을 내릴 때 일정한 조건이나 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조치사항(사후관리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주3) 사후관리조치 판정

구분	사후관리조치 내용(1)
0	필요없음
1	건강상담 ²³⁾ ()
2	보호구지급 및 착용지도 ()
3	추적검사 ²⁴⁾ ()검사항목에 대하여 20 년 월 일경에 추적검사가 필요
4	근무중 ()에 대하여 치료
5	근로시간 단축 ()
6	작업전환 ()
7	근로제한 및 금지 ()
8	산재요양신청서 직접 작성 등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직업병화건의뢰 안내 ²⁵⁾
9	기타 ²⁶⁾ ()

2017년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

2018. 12



27

1. 실시현황

- 2017년도 근로자 건강진단(이하 "건강진단" 이라 함)은 건강진단 종류별로 **특수건강진단** 83,362개소(99.97%)에서 2,023,574명(99.99%), **임시건강진단**은 26개소(0.03%)에서 209명(0.01%)을 실시하였음.

표 2-1. 2017년도 건강진단 종류별 실시현황

구분	사업장 [개소, 구성비(%)]				근로자 [명, 구성비(%)]			
	'17년	'18년	증감	증감률(%)	'17년	'18년	증감	(증감률%)
전체	83,388 (100)	80,812 (100)	2,576	3.2	2,023,783 (100)	1,976,820 (100)	46,963	2.4
특수 건강진단	83,362 (99.97)	80,795 (99.98)	2,567	3.2	2,023,574 (99.99)	1,976,545 (99.99)	47,029	2.4
아간직업	36,148	34,342	1,806	5.2	1,049,195	1,015,965	33,230	3.3
임시 건강진단	26 (0.03)	17 (0.02)	9	52.9	209 (0.01)	275 (0.01)	66	24.0

28

표 3-4. 2017년도 특수건강진단 직업병 요관찰자(C1) 및 유소견자(D1)의 질병종류

15만 /200만
= 7.5%

구분	연도	전체	전체종류 ⁽¹⁾	소음성충	유기화합물	산-알칼리-가스상용질	금속류종류			기타질환 ⁽²⁾	
							소계	납	기타 ⁽³⁾		
발생자 (만·%)	소계	'17년	164,818	3,056	136,307	4,073	1,533	5,299	316	4,983	1,750
		'18년	156,912	4,067	140,632	5,084	1,789	5,456	369	5,087	1,894
		전년대비	▽4,094	▽211	▽2,325	▽1,011	▽256	▽157	▽53	▽104	▽134
		증감률(%)	▽2.6	▽5.2	▽1.7	▽19.9	▽14.3	▽2.9	▽14.4	▽2.0	▽7.1
	직업병 요관찰자 (C1)	'17년	142,695	3,653	126,577	4,033	1,515	5,184	295	4,889	1,733
		'18년	147,102	3,930	129,176	5,032	1,784	5,314	311	5,003	1,866
		전년대비	▽4,407	▽277	▽2,599	▽999	▽269	▽130	▽20	▽104	▽133
		증감률(%)	▽3.0	▽7.0	▽2.0	▽19.9	▽16.1	▽2.4	▽8.4	▽2.1	▽7.1
	직업병 유소견자 (D1)	'17년	12,123	203	11,730	40	18	115	31	84	17
		'18년	11,810	137	11,456	52	5	142	58	84	16
		전년대비	313	66	274	▽12	13	▽27	▽27	-	▽1
		증감률(%)	2.7	48.2	2.4	▽23.1	260.0	▽19.0	▽46.6	-	▽5.6

(1) 전체종류 : 음향성, 먼진, 석면, 방사선, 기타문진 등에 의한 전체종 또는 직업성호기질환
 (2) 기타 금속류 종류 : 수은, 크롬, 카드뮴, 기타 등에 의한 종족
 (3) 기타질환 : 천동, 이상기압, 유해광선, 기타 등에 의한 질환
 ※ 1명의 유소견자가 2가지 이상 질병 판정을 받은 경우 각 판정별 합산하였음

28) 직업병 유소견자(D1)의 유해인자별 및 사후관리 조치내역

구분	계	사 후 관 리 조 치									
		필요 입원	건강 상담	보호구 사용	추적 검사	근무중 치료	근로시 간 단축	직업 전환	근로중 지 원 제한	기 타	
합 계	12,123	1,989	28	5,476	2,339	136	71	959	154	972	
소 계	11,730	1,842	25	5,430	2,238	73	69	875	125	952	
이 상 기 압	3	1	-	1	1	-	-	-	-	-	
분 진	소 계	203	17	2	32	73	33	2	29	7	
	광물성	154	13	2	20	53	25	2	24	7	
	석면	26	-	-	3	18	1	-	4	-	
	기 타	23	4	-	9	2	7	-	1	-	
유기 화합물	40	5	-	2	-	6	-	15	11		
금 속	소 계	115	12	1	10	12	16	-	33	10	
	연	31	3	-	-	8	-	-	10	10	
	수 은	-	-	-	-	-	-	-	-	-	
	크롬	19	1	-	3	5	5	-	3	-	
	카드뮴	9	2	-	-	1	1	-	4	-	
기 타	56	6	1	7	9	10	-	16	-		
산-알칼리-가스상용질	18	12	-	-	3	3	-	-	-		
전 동	3	-	-	-	-	2	-	1	-		
유 해 광 선	-	-	-	-	-	-	-	-	-		
아 간 작 업	-	-	-	-	-	-	-	-	-		
기 타	11	-	-	1	-	3	-	6	1		

표 1 유소견자 수는 만 근로자 수임

1. 제도의 성립
2. 특수건강진단
3. **작업환경 측정**

산안법 상 작업환경 측정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2010. 6. 4.>

(중략)

-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산안법 상 작업환경 측정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계속>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의 분석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이하 "지정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중략)

⑥ 사업주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작업환경측정을 한 기관으로 하여금 개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하 후락, 지정요건, 평가 방법 등)

(4)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유해인자	측정대상
화학적 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탄화물, 불포화, 불리온화물(유기염, 노화염, 카세인 등 유기화합물 13종) · 구리, 니켈, 알루미늄, 카드뮴 등 금속류 23종 · 황산, 질산, 불화수소, 수산화나트륨, 염산 및 알칼리류 11종 · 질소, 일산화이산화탄소, 황화수소 등 가스 상태 물질류 15종 · 악취, 브롬화물 등 제24조에 따른 유해물질 14종 · 금속가분류 1종
물리적 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배치권 시간가중평균 80dB 이하) · 진동(인간 보건규칙 제38조 보건기준 제6항)
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성 분진, 국물 분진, 먼 분진, 나무 분진, 황급 등 유기성류 6종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유해인자



작업환경측정 절차



· 작업환경측정기관 협회명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이메일)에 알려드립니다. 「작업환경측정기관 현황」 검색

· 사업장 소속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도 작업환경측정 가능

별첨 자료 참조



35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삼성전자 운영 반도체 공장을 비롯해 삼성그룹 전자계열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적성 공개해야 하는 작업환경보고서에 담긴 내용 중 일부를 가린 '부분 보고서'만을 작업장 노동자들에게 알리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토크에서 "(국내 다른 사업장과 달리)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전자계열사들이 풀버전 작업환경 보고서를 소속 작업장 노동자들에게 제공하지 않아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에스케이(SK)하이닉스반도체 등 다수 기업장은 작업환경보고서 풀버전을 해당 작업장 노동자들에게 보여주는 반면, 삼성전자는 화학물질 사용(황)이나 김광 미를 등 이른바 '핵심기술 정보'라고 주장하는 일부 내용은 블라인드 처리 하고 유해인자 노출 관련 정보만 기록된 '부분 제공' 보고서를 노동자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이다. 산업재해를 다룬 싸움에서 스스로 산재를 입증해야 하는 반도체 공장 피해자·유족들은 "더 많은 필요한 정보"를 알기 위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풀버전 작업환경보고서를 제공하라고 줄곧 요구해왔다. 임일이 불 때 이번 '삼성 대 고용부' 갈등의 쟁점은 보고서 공개 자체보다는 '풀버전 보고서 제공'에 있는 셈이다.

삼성 전자계열사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공개 관련 일지



삼성전자

2016년

2014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숨진 전 삼성전자 온양공장 노동자(아이마개씨) 유족, 노동부 상대로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풀버전 공개하라" 행정소송 제기

2018년

2월1일 대전고등법원, 삼성전자 온양공장(반도체)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공개하라" 판결

2월18일 고용부, 삼성전자 온양공장 보고서 공개 결정

3월12일 고용부, 삼성디스플레이 탕청공장(LCD) 및 삼성SDI 천안공장(배터리) 보고서 공개 결정

3월19일 고용부, 삼성전자 구미공장(휴대폰) 보고서 공개 결정

3월20일 고용부,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공장(반도체) 보고서 공개 결정

4월1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삼성전자의 '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승인,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 해당 내용 포함' 판정

4월19일 수원지방법원, 삼성전자의 '보고서 공개 집행정지 신청' 승인

36



1. 제도의 성립
2. 특수건강진단
3. 작업환경 측정
4. 질병 판정 위원회 및 역학조사

산재보상보험법상 질병 판정위원회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심의

①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 :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분사무소에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함)를 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1항).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39

산재보상보험법상 질병 판정위원회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심의 (계속)

② 판정위원회의 심의절차 : 근로복지공단 분사무소의 장은 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질병에 대해 보험급여의 신청 또는 청구를 받으면 판정위원회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판정위원회는 심의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지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심의를 의뢰한 근로복지공단 분사무소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본문).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칠 수 없으면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단서).

40

산재보상보험법상 질병 판정위원회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는 2008년 7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설치된 업무상
질병 판정 전문기구

뇌심혈관계 질환을 비롯하여 근골격계 질환 및 암 등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판단이 어려운 업무상
질병 판정의 전문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

과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전문성 부족 및 편파적인 판정으로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업무상 질병이 인
정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인정이 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

41



[더딘 업무상질병 판정, 눈물짓는 재해노동자 ①] 신속한 산재 처리를 위한 제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입법목적은 업무상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이다. 업무상질병 판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일관성 유지않게 중요한 ..

최진수 / 2019-02-28 08:00



[더딘 업무상질병 판정, 눈물짓는 재해노동자 ②] 재할 방해하는 특진제도 장기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입법목적은 업무상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이다. 업무상질병 판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일관성 유지않게 중요한 ..

강마경 / 2019-02-27 08:00



[더딘 업무상질병 판정, 눈물짓는 재해노동자 ③] 업무상질병 추정의 원칙 도입과 제도개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입법목적은 업무상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이다. 업무상질병 판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일관성 유지않게 중요한 ..

표민 / 2019-02-26 08:00



[더딘 업무상질병 판정, 눈물짓는 재해노동자 ④]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입법목적은 업무상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이다. 업무상질병 판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일관성 유지않게 중요한 ..

이종한 / 2019-02-25 08:00

42



신제 승인, 지금보다 빨라져야 한다

산재보험의 근거가 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차목적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해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김정수 / 2019-02-21 08:00



재해노동자 관점으로 근로복지공단 행정 변화야

2018년 산업재해보상제도는 많은 분야에서 변화가 있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자체의 변화는 거의 없었지만 시행령과 하위규정이 많이 바뀌.

김동희 / 2019-02-11 08:00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신리성만큼 신속성도 중요

얼마 전 진로실로 한 노동자가 찾아왔다. 수천 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공장 직 당에서 프리업무를 하는 분이였다. 몇 달 전 얼마다가 허리를.

김정수 / 2019-01-31 08:00

직업병 승인의 신속성 확보

질판위의 판정 지연

2008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질병판정위가 처리기한을 넘겨 처리한 사건이 3천970건이었고, 2015년 질병 판정건 중 최장 심의기간은 916일, 2017년 판정건 중 최장 기간은 638일

추정의 원칙 혹은 당연 인정기준의 적용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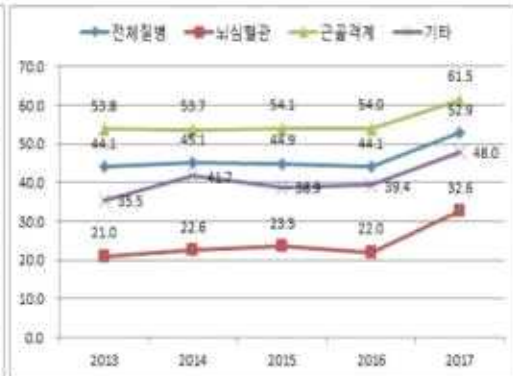
존현 근골격계질환 6가지(회전근개파열·요추간판탈출증·경추간판탈출증·반월상연골파열·수근관 증추근·외상과염)에 추정의 원칙 적용을 위한 판단 기준이 이미 마련되었음
고용노동부 고시의 뇌심혈관질환 인정 기준도 추정의 원칙으로 활용할 수 있음

직업병 승인의 신속성 확보

【연도별 판정전수】



【연도별 인정률】



산안법 상 역학조사

제43조의2(역학조사)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疫學調査)"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 ②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7. 25.>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중략)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 ④ 역학조사의 방법·대상·절차,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47

남영전구 수은중독사건

2015년 3월 15일~4월 15일 형광램프
설비 철거공사

하도급: 남영전구(발주)→우리토건
→서우건설 →에코산업(유)→행운비
철자원금속→우성산업

산재요양신청을 계기로 언론보도

- 10월 12일 매일노동뉴스 2면 산재신청 최초보도
- 10월 20일 고용노동청 사업장 감독 실시
- 10월 21일 수은중독 의심피해자 21명 확인
- 10월 22일 공장철거 시 수은불법매립 확인
- (수은 30L, 수은합질물 50L, 오염토양 드럼통기 428개 수거)
- 11월 2일 남영전구 공식사과
- 11월 17일 영산강유역환경청 주변지하수·토양
오염조사결과 이상없음 발표

지하에 위치한 형광램프생산라인 내부



철거공사 당시 현장에서 관찰된 수은



[사고개요]

2016년 1월과 2월 사이 경기도 부천시 ○○○테크와 인천광역시 남동구 ○○○테크를 포함한 휴대전화 부품업체 2곳에서 근로자 4명이 잇따라 사신경 손상을 입고 실명 위기에 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알루미늄질 과정에서 발생하는 알을 식히는 냉각 및 세척용으로 사용하는 고농도 메틸알코올(메탄올) 증기를 작업자가 흡입하면서 일어났다. 이들을 한 명은 한쪽 눈이 실명된다. 사고가 발생한 업체들은 고농도의 메탄올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발생 후 작업환경측정을 한 결과 메탄올이 노출기준(200ppm)보다 최대 11배(1,100~2,220ppm) 높게 검출된 사실도 나타났다. 메탄올은 연화성 약제로 고농도에 노출되면 두통을 일으키고 중추신경계 장애를 유발한다. 심하면 시력을 잃는다. 책아 또는 성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PART 02-28



43



'17년 8월 경기도 안성 소재 소화기 제조 사업장에서 소화약제 충전 업무를 하는 근로자 2명이 소화약제(HCFC-123)에 노출되어 급성 독성간염 발생(추정)

재해발생원인

- ▶ **환기가 불충분한 약제충전 공정에서 작업**
약제충전 공정에 환기장치가 미설치되어 있어 HCFC-123 증기가 작업장 내부로 확산·체류
- ▶ **개인보호구 미착용**
호흡용 보호구(방독마스크)를 미착용하여 HCFC-123 증기를 직접 흡입

HCFC-123의 특성 및 건강영향

물 질 명	2,2-디클로로-1,1,1-트리플루오로에탄(C ₂ HCl ₂ F ₃) (CAS No. : 306-83-2)
용 도	냉매제, 소화제

50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첨1]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88호, 2018. 4. 17.,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안전관리자, 인증) 044-202-7729, 7733
고용노동부(산업보건과-교육, 건강검진, 석면) 044-202-7746, 7739, 7738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7758, 7754

제1장 총칙 <개정 2009. 2. 6.>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6. 4.>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5.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7.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3. 6. 12.>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집행·조정 및 통제
2.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防護裝置)·보호구(保護具) 등의 안전성 평가 및 개선
4.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기준 작성 및 지도·감독
5.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6. 안전·보건의식을 복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운동 등 안전문화 추진
7. 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8.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9. 안전·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10.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6. 12.>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3.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12.>

1.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3. 6. 12.]

제6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6. 12.>

[전문개정 2009. 2. 6.]

제7조 삭제 <2009. 10. 9.>

제8조(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 10. 9., 2010. 6. 4.>

[전문개정 2009. 2. 6.]

제9조(협조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행정기관(고용노동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규제를 하려면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해당 규제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협의·조정 사항을 보고하여 확정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2. 6.]

제9조의2(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7. 4. 18.>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신설 2017. 4. 18.>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7. 4. 1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6. 4., 2017. 4. 18.>

[전문개정 2009. 2. 6.]

제10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7. 4. 18.>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20., 2010. 6. 4., 2013. 6. 12.>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7. 4. 18.]

제10조의2 삭제 <2009. 2. 6.>

제11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② 근로자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 또는 결과를 통지할 것을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 2011. 7. 25.>

1.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29조의2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체를 말한다)가 의결한 사항
2. 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3. 제29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4. 제41조에 규정된 사항
5.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2. 6.]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2. 6.]

제2장 안전·보건 관리체제 <개정 2009. 2. 6.>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3. 6. 12.>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1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책임자는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③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관리책임자의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6. 12.>

[전문개정 2009. 2. 6.]

제14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개정 2013. 5. 22.>

[전문개정 2009. 2. 6.]

제15조(안전관리자 등)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6. 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정수(定數) 이상으로 늘리거나 다시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2013. 6. 12.>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7. 4. 18.>

⑥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기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6. 4., 2013. 6. 12., 2017. 4. 18.>

[전문개정 2009. 2. 6.]

제15조의2(지정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2013. 6. 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개정 2013. 6. 12.>

[전문개정 2009. 2. 6.]

제15조의3(과징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의2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6조(보건관리자 등)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6. 12.>

③ 보건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개정 2013. 6. 12., 2017. 4. 18.>

[전문개정 2009. 2. 6.]

제16조의2(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건의하거나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경우에 사업주·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6조의3(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① 사업주(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증원·개임 및 업무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제4항·제6항,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안전관리"는 "안전보건관리"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개정 2017. 4. 18.>

[본조신설 2016. 1. 27.]

[시행일]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8년 9월 1일
2.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3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9년 9월 1일

제17조(산업보건역)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역을 두어야 한다. 다만,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업보건역을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산업보건역의 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3. 6. 12., 2017. 4. 18.>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개정 2013. 5. 22.>

③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8조의2(안전보건조정자)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공사, 다음 각 호의 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를 함께 발주하는 자는 그 각 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그에 따른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1.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 분리발주하여야 하는 전기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에 따라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하는 정보통신공사

②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와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업무,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4. 18.]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⑤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⑥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⑧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장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2009. 2. 6.>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2. 6.]

제21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사업주는 제20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2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①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4장 유해·위험 예방조치 <개정 2009. 2. 6.>

제23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2. 6.]

제24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흠(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2. 6.]

제25조(근로자의 준수 사항) 근로자는 제23조, 제24조 및 제38조의3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3. 6. 12.>

[전문개정 2009. 2. 6.]

제26조(작업중지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근로감독관과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⑤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제4항의 원인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6조의2(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2013. 6. 12.>

1. 제23조,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
2.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5조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침과 표준을 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분야별로 기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③ 기준제정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2. 6.]

제28조(유해작업 도급 금지) ①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 없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 줄 때 지켜야 할 안전·보건조치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6. 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경우 제49조에 준하는 안전·보건평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2. 6.]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다.<신설 2011. 7. 25.>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 2011. 7. 25., 2013. 6. 12.>
-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 2011. 7. 25.>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급하는 자가 해당 정보를 미리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직접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 4. 18.>
1.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 ⑥ 제1항에 따른 사업주 또는 제5항에 따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25., 2013. 6. 12.>
- ⑦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1. 7. 25., 2013. 6. 12.>
- ⑧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25., 2013. 6. 12.>
1.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할 것
 2.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

⑨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1. 7. 25., 2013. 6. 12.>

⑩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운영,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6. 4., 2011. 7. 25., 2013. 6. 12.>

[전문개정 2009. 2. 6.]

제29조의2(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1. 7. 25.>

③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사업주는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노사협의체는 그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⑥ 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

⑦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하거나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⑧ 노사협의체에 관하여는 제1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9조의3(설계변경의 요청) ① 건설공사의 수급인(해당 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건설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를 발주한 도급인(설계를 포함하여 도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수급인이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전문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48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계획변경 명령을 받은 수급인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건설공사를 발주한 도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 요청 내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6. 12.]

제29조의4(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①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그의 수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도급하는 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요청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①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1. 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기준
2. 사업의 규모별·종류별 사용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는 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그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

④ 삭제<2013. 6. 12.>

⑤ 삭제<2013. 6. 12.>

⑥ 삭제<2013. 6. 12.>

[전문개정 2009. 2. 6.]

제30조의2(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급을 받은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지도업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6. 12.]

제31조(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 2011. 7. 25.>

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3. 6. 12.>

⑤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6. 12., 2016. 1. 27.>

⑥ 제5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6. 1. 27.>

[전문개정 2009. 2. 6.]

제31조의2(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이하 이 조에서 "건설업기초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건설업기초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사업주(제2호는 해당 기관의 사업주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6. 1. 27.>

1. 관리책임자,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및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③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11. 7. 25.>

④ 직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6. 4., 2011. 7. 25.>

⑤ 제3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1. 7. 25.>

[전문개정 2009. 2. 6.]

제32조의2(등록기관의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1조제5항, 제31조의2제1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제32조의3(준용) 제31조제5항, 제31조의2제1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제31조제5항, 제31조의2제1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기관"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개정 2013. 6. 12., 2016. 1. 27.>

[본조신설 2011. 7. 25.]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① 누구든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6. 4., 2013. 6. 12.>

②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작동부분의 돌기부분, 동력전달부분이나 속도조절부분 또는 회전기계의 물림점을 가진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3. 6. 12.>

③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 2013. 6. 12.>

[전문개정 2009. 2. 6.]

제34조(안전인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이하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이라 한다)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등에 관한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준은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의 종류별, 규격 및 형식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3. 6. 12.>

②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6. 1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④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그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2013. 6. 12.>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2011. 7. 25., 2013. 6. 12.>

⑥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명·모델·제조수량·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등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11. 7. 25.>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판매에 관한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1. 7. 25., 2013. 6. 12.>

⑧ 안전인증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5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6. 4., 2011. 7. 25.>

[전문개정 2009. 2. 6.]

제34조의2(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3. 6. 12.>

②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이 아닌 것은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개정 2013. 6. 12.>

③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는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 6. 12.>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

1.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2.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9. 2. 6.]

제34조의3(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안전인증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3. 6. 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안전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규격과 형식의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개정 2013. 6. 12.>

[전문개정 2009. 2. 6.]

제34조의4(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2013. 6. 12.>

1.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제3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전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2013. 6. 12.>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3. 6. 12.]

제34조의5(안전인증기관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 업무 및 제34조제5항에 따른 확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의 업무수행 실태를 조사·평가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안전인증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안전인증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인증기관"으로 본다.<개정 2013. 6. 12., 2017. 4. 18.>

[본조신설 2011. 7. 25.]

제34조의6 삭제 <2007. 7. 27.>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3. 6. 12.>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제34조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2. 6.]

제35조의2(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①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 ②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것은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 ③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 2011. 7. 25.>

1. 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3.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9. 2. 6.]

제35조의3(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1. 7. 25.>

③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1. 7. 25.>

[전문개정 2009. 2. 6.]

제35조의4(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1.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3.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4.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2. 6.]

제36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유해·위험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기계등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1. 7. 25.>

③ 안전검사에 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그 유해·위험기계등이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25.>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위험기계등은 사용하지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 7. 25.>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기계등(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1. 7. 25.>

⑥ 안전검사기관은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해·위험기계등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1. 7. 25.>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의 업무수행 실태를 조사·평가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신설 2011. 7. 25.>

⑧ 안전검사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1. 7. 25.>

⑨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종류, 사용연한(使用年限)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개정 2010. 6. 4., 2011. 7. 25.>

⑩ 안전검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신설 2011. 7. 25., 2013. 6. 12., 2017. 4. 18.>

[전문개정 2009. 2. 6.]

제36조의2(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①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가 근로자대표와 협의(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기준,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 방법 등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②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검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 2011. 7. 25., 2013. 6. 12.>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사람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③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2011. 7. 25.>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하는 등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2.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지정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⑤ 제4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유해·위험기계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정검사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7. 4. 18.>
 - ⑦ 자율검사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요건, 인정 방법 및 인정 절차,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6. 4., 2017. 4. 18.>
 - ⑧ 지정검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지정검사기관"으로 본다.<개정 2011. 7. 25., 2013. 6. 12., 2017. 4. 18.>
- [전문개정 2009. 2. 6.]

제36조의3(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 또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그 안전성의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제조하는 자와 작업환경 개선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자에게는 제조물의 품질·안전성 및 설계·시공 능력 등의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2013. 6. 1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2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경우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다.<신설 2011. 7. 2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1. 7. 2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내용, 등록, 등록 취소 및 환수의 절차, 등록 제한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6. 4., 2011. 7. 25.>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3. 6. 12.]

제36조의4(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유해·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및 안전검사 이력 등 안전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종합관리한 정보를 안전검사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사업장의 유해·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및 안전검사 이력 등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유해·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및 안전검사 이력 등 안전에 관한 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제37조(제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이 조에서 "제조등금지물질"이라 한다)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6. 12.>

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건강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2. 제39조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이 평가된 유해인자나 제40조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이 조사된 화학물질 가운데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연구를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조등금지물질을 제조·수입 또는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2013. 6. 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2. 6.]

제38조(제조 등의 허가)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허가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6. 4., 2013. 6. 12.>

② 허가대상물질의 제조·사용설비, 작업방법, 그 밖의 허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6. 4., 2013. 6. 12.>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자"라 한다)는 그 제조·사용설비를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으로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12.>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자의 제조·사용설비 또는 작업방법이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사용설비를 수리·개조 또는 이전하도록 하거나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으로 그 물질을 제조·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2013. 6. 12.>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 2013. 6. 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자체검사 결과 이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8조의2(석면조사) 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일반석면조사"라 한다)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을 조사(이하 "기관석면조사"라 한다)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석면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에 대한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의 이행 명령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이행 명령의 결과를 보고받을 때까지의 작업중지 명령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관석면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을 지도·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석면조사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제5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신설 2017. 4. 18.>

⑦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관석면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4. 18.>

⑧ 석면조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석면조사기관"으로 본다.<개정 2013. 6. 12., 2017. 4. 18.>

[전문개정 2011. 7. 25.]

제38조의3(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본조신설 2009. 2. 6.]

제38조의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①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인력·장비 등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 7. 25.>

③ 석면해체·제거업자(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을 말한다. 이하 제38조의5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 2011. 7. 25.>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⑤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신고 절차, 제4항에 따른 평가 기준·방법 및 공표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6. 4.>

⑥ 석면해체·제거업자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 2. 6.]

제38조의5(석면농도기준의 준수) ①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석면농도기준"이라 한다)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② 제1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측정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6. 4.>

③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 7. 25.>

[본조신설 2009. 2. 6.]

제39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여 관보 등에 고시한다.<개정 2010. 6. 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④ 제3항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을 평가할 대상 물질의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2. 6.]

제39조의2(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① 사업주는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작업장 내의 그 노출 농도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시설 및 설비의 설치나 개선이 현존하는 기술로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과 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의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40조(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외의 화학물질(이하

"신규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이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3.

6. 12.>

1.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신규화학물질의 수입량이 소량이거나 그 밖에 위해(危害)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은 제1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조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가 제출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조치 사항 등을 공표하고 관계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에게 시설·설비를 설치·정비하고 보호구를 갖춰 두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6. 12.>

⑤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신규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12.>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 또는 그 밖에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제39조제3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13. 6. 12.>

⑦ 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명령을 받은 자는 유해성·위험성 조사 결과 해당 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3. 6. 12.>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결과 및 자료를 검토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39조제1항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하거나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신설 2013. 6. 12.>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3. 6. 12.]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①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제는 제외한다) 중 제3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이하 "대상화학물질"이라 한다)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2013. 6. 4., 2013. 6. 12.>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1의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2.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3.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대상화학물질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6. 4., 2011. 7. 25.>

1.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2. 제1호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③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11. 7. 25.>

④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은 방법 외의 방법으로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25.>

⑤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1. 7. 25.>

⑥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대상화학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 방법·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1. 7. 25.>

⑦ 사업주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시기, 내용 및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1. 7. 25.>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2011. 7. 25.>

⑨ 사업주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25.>

⑩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2011. 7. 25.>

⑪ 근로자를 진료하는 의사,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을 포함한다), 제17조에 따른 산업보건의 또는 근로자대표 등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 2011. 7. 25., 2013. 6. 12.>

[전문개정 2009. 2. 6.]

제41조의2(위험성평가)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 6. 12.]

제5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개정 2009. 2. 6.>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6. 4.>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12.>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의 분석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이하 "지정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⑤ 제4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지정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전산자료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0. 6. 4., 2013. 6. 12.>

⑥ 사업주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작업환경측정을 한 기관으로 하여금 개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지정측정기관의 유형, 업무 범위, 지정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지도·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0. 6. 4.>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측정기관을 평가(제8항에 따른 평가를 포함한다)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6. 4.>

⑩ 지정측정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개정 2017. 4. 18.>

[전문개정 2009. 2. 6.]

제42조의2(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뢰성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사업주와 근로자는 신뢰성평가를 받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신뢰성평가의 방법·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2. 6.]

제43조(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③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 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건강진단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

⑤ 사업주는 제1항·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12.>

⑥ 사업주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 없이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종류·시기·주기·항목·비용 및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관리, 제2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제5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 그 밖에 건강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6. 4.>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지도·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0. 6. 4.>

⑩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건강진단기관 중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평가(제9항에 따른 평가를 포함한다)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및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6. 4.>

⑪ 건강진단기관 중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건강진단기관"으로 본다.<개정 2010. 6. 4., 2013. 6. 12., 2017. 4. 18.>

[전문개정 2009. 2. 6.]

제43조의2(역학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疫學調査)"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 7. 25.>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정보,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

④ 역학조사의 방법·대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2. 6.]

제44조(건강관리수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직업성질환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 및 일정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 12.>

②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강관리수첩을 제출함으로써 해당 재해에 관한 의사의 초진소견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3. 6. 12.>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을 받은 자는 그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 6. 12.>

④ 건강관리수첩의 내용·서식·용도, 그 밖에 건강관리수첩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6. 4., 2013. 6. 12.>

[전문개정 2009. 2. 6.]

제45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①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10. 6. 4.>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46조(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47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③ 제1항에 따른 자격·면허·경험·기능,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6. 4.>

④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6장 감독과 명령 <개정 2009. 2. 6.>

제48조(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기계·기구 및 설비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 6. 4.>

1.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3.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③ 건설업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의 경우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생략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한 후 이를 스스로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10. 6. 4., 2011. 7. 25.>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 또는 공사를 중지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2013. 6. 12.>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2. 6.]

제49조(안전·보건진단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7. 4. 18.>

④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의 내용,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4. 18.>

⑤ 안전·보건진단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개정 2017. 4. 18.>

[전문개정 2009. 2. 6.]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이 조에서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 설비를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5.>

⑤ 사업주는 제4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그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설 2011. 7. 25.>

⑥ 제5항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의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⑦ 사업주와 근로자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⑧ 사업주는 제5항에 따라 사업장에 갖춰 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⑩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를 평가한 결과 제8항에 따른 보완 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전문개정 2009. 2. 6.]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2.>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제39조제2항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9조제1항의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51조(감독상의 조치) ①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점검을 하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업주 등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2013. 6. 12., 2017. 4. 18.>

1. 사업장
 2. 제15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30조의2제1항, 제31조제5항,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3항, 제34조의5제1항, 제36조제5항, 제36조의2제3항, 제38조의2제2항, 제42조제4항, 제43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기관의 사무소
 3.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사무소
 4. 제52조의4에 따라 등록된 지도사(指導士)의 사무소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근로자 또는 제52조의4에 따라 등록된 지도사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5조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검사 및 지도 등을 하게 하거나,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 ④ 제3항에 따라 공단 소속 직원이 검사 또는 지도업무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사업장 또는 지도사의 사무소를 출입할 경우 출입자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기계·기구·설비·원재료의 대체·사용중지·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명령받은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제6항에 따른 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위험 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의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2. 6.]

제51조의2(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1. 제23조·제24조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제51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함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2. 6.]

제52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신고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6장의2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개정 2013. 6. 12.>

제52조의2(지도사의 직무) ① 산업안전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6. 12.>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지도
2. 유해·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지도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보건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 6. 12.>

1.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2.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3. 근로자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지도
4. 직업성 질병 진단(「의료법」에 따른 의사인 산업보건지도사만 해당한다) 및 예방 지도
5. 산업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업무 영역별 종류 및 업무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6. 12.>

[전문개정 2009. 2. 6.]

제52조의3(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 <개정 2013. 6. 12.>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의 보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지도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2013. 6. 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사시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2013. 6. 12.>

④ 제3항에 따라 지도사시험 실시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⑤ 지도사시험의 과목, 다른 자격 보유자에 대한 시험 면제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52조의4(지도사의 등록) ① 지도사가 그 직무를 시작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3. 6. 12.>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 2013. 6. 12., 2016. 1. 2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52조의15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12.>

⑤ 제4항에 따른 갱신등록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실적이 있는 지도사만이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도실적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지도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3. 6. 12.>

⑥ 제2항에 따른 법인에 관하여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3. 6. 12.>

[전문개정 2009. 2. 6.]

제52조의5(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1. 지도사에 대한 지도·연락 및 정보의 공동이용체제의 구축·유지
2. 지도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업주의 불만·고충의 처리 및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지도사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2. 6.]

제52조의6(비밀 유지) 지도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52조의7(손해배상의 책임) ① 지도사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52조의8(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된 지도사가 아닌 자는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6. 12.>

[전문개정 2009. 2. 6.]

제52조의9(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제52조의10(지도사의 교육)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제52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를 개시하려면 제52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3. 6. 12.]

제52조의11(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① 지도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도사는 제5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 기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6. 12.]

제52조의12(금지 행위) 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2. 의뢰인으로 하여금 법령에 따른 신고·보고, 그 밖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3.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상담

[본조신설 2013. 6. 12.]

제52조의13(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지도사가 제52조의2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사업주에게 관계 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이 제5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직무의 수행을 위한 것이면 열람을 신청받은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 6. 12.]

제52조의14(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貸與)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 6. 12.]

제52조의15(등록의 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52조의4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52조의6, 제52조의12 또는 제52조의14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 6. 12.]

제7장 삭제 <2001. 12. 31.>

제53조 삭제 <2001. 12. 31.>

제54조 삭제 <2001. 12. 31.>

제55조 삭제 <2001. 12. 31.>

제56조 삭제 <2001. 12. 31.>

제57조 삭제 <2001. 12. 31.>

제58조 삭제 <2001. 12. 31.>

제59조 삭제 <2001. 12. 31.>

제60조 삭제 <2001. 12. 31.>

제8장 보칙 <개정 2009. 2. 6.>

제61조(산업재해 예방시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3. 6. 12.>

1.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지도시설·연구시설 및 교육시설
2. 작업환경의 측정 및 안전·보건진단을 위한 시설

3.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전문개정 2009. 2. 6.]

제61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61조의3(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0. 6. 4.>

1. 재해 예방 관련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재해 예방 관련 사업,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 및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전문개정 2009. 2. 6.]

제62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촉진)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보조·지원의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2. 보조·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3. 보조·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5.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

6.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 중 보조·지원 대상자가 파산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소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7. 25.>

④ 제2항에 따라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조·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 7. 25.>

⑤ 보조·지원의 대상·방법·절차, 관리 및 감독,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소 및 환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0. 6. 4., 2011. 7. 25.>

[전문개정 2009. 2. 6.]

제63조(비밀 유지)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하는 자, 제35조에 따른 신고 수리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하는 자, 제36조의2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업무를 하는 자, 제40조제1항·제6항에 따라 제출된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또는 조사결과를 검토하는 자, 제41조제8항에 따라 제출된 물질안전보건자료료를 검토하는 자, 제41조제1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하는 자, 제43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자, 제48조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검토하는 자,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하는 자 및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검토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2013. 6. 12.>

[전문개정 2009. 2. 6.]

제63조의2(청문 및 처분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2013. 6. 12., 2016. 1. 27., 2017. 4. 18.>

1. 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 제16조의3제3항, 제30조의2제3항, 제34조의5제4항, 제36조제10항, 제36조의2제8항, 제38조의2제8항, 제42조제10항, 제43조제11항, 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정의 취소
2. 제28조제4항에 따른 인가의 취소
3.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4.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5. 제37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

6. 제38조제5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7. 제32조의3, 제36조의3제3항, 제38조의4제6항, 제52조의15에 따른 등록의 취소

8. 제62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원의 취소

② 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 제16조의3제3항, 제30조의2제3항, 제32조의3, 제34조의5제4항, 제36조제10항, 제36조의2제8항, 제38조의2제8항, 제38조의4제6항, 제42조제10항, 제43조제11항, 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4항, 제34조의3제1항, 제35조의3제1항, 제36조의2제4항, 제36조의3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5항 및 제52조의15에 따른 취소, 정지, 사용 금지 또는 개선명령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6. 4., 2011. 7. 25., 2013. 6. 12., 2016. 1. 27., 2017. 4. 18.>

[전문개정 2009. 2. 6.]

제64조(서류의 보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3호의 경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2., 2016. 1. 27.>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기록

2. 제13조·제15조·제16조·제16조의3 및 제17조에 따른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3. 제19조제3항 및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회의록

4.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5. 제40조제1항·제6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②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은 안전인증·안전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제34조제6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11. 7. 25., 2013. 6. 12.>

③ 일반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해체·제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하고, 기관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과 석면조사기관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11. 7. 25.>

④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 2011. 7. 25.>

⑤ 지도사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 2011. 7. 25.>

⑥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 2011. 7. 25.>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개정 2011. 7. 25.>

[전문개정 2009. 2. 6.]

제6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2011. 7. 25., 2013. 6. 12., 2017. 4. 18.>

1. 제4조제1항제2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
- 1의2. 제15조제5항(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2. 제27조제2항에 따른 기준제정위원회의 구성·운영
3. 제28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평가
- 3의2.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기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등록 업무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
- 4의2.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업무
5.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
6. 제34조제5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확인
7.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업무
8.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9.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 9의2. 제3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검사원의 양성교육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0.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
- 10의2. 제36조의4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
11. 제38조의2제5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능력의 평가 및 지도·교육에 관한 업무
- 11의2.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 11의3. 제38조의4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평가에 관한 업무
- 11의4. 제39조제3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업무
- 12. 제41조제10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 13. 제42조제8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분석 능력의 평가 및 지도·교육에 관한 업무
- 13의2. 제42조제9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평가에 관한 업무
- 13의3.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신뢰성평가에 관한 업무
- 14. 제43조제9항에 따른 건강진단능력의 평가 및 지도·교육에 관한 업무
- 14의2. 제43조제10항에 따른 지정건강진단기관의 평가에 관한 업무
- 15.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 16. 제44조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 17.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접수, 심사 및 확인
- 17의2. 제4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 18. 제49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접수·심사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확인
- 18의2. 제52조의4제5항에 따른 지도사 보수교육
- 18의3. 제52조의10에 따른 지도사 연수교육
- 18의4. 제61조제3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운영 업무
- 19.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지원 및 보조·지원의 취소·환수에 관한 업무
-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7. 25.]

제66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6. 1. 27.>

- 1. 제28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평가를 받으려는 자
- 2.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게 직무교육을 이수하게 하려는 사업주
- 3.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 4. 제34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
- 5.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 6.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
- 7.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
- 8. 제47조에 따른 자격·면허의 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으려는 자

9.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받으려는 자
 10.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받으려는 자
 11. 제52조의3에 따른 지도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12. 제52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
 1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수익자로 하여금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2. 6.]

제9장 벌칙 <개정 2009. 2. 6.>

제66조의2(벌칙)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6. 12.>

1.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8조의4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38조제5항, 제48조제4항 또는 제51조제7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 2. 6.]

제6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7. 25., 2013. 6. 12., 2018. 4. 17.>

1. 제33조제3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4제1항, 제38조제3항, 제38조의3, 제46조, 제47조제1항 또는 제49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한 자
2. 제34조의4제2항, 제38조제4항, 제38조의2제4항, 제43조제2항, 제49조의2제3항·제10항 또는 제51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 2. 6.]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7. 25., 2013. 6. 12., 2017. 4. 18., 2018. 4. 17.>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教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2.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한 자

2의2. 제2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한 자

3. 제29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의2제2항·제3항, 제35조의4제1항, 제52조의6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자

4. 제34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 2. 6.]

제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7. 25., 2013. 6. 12.>

1. 제29조제8항, 제35조제1항, 제35조의2제2항·제3항, 제40조제2항·제7항, 제43조제5항 또는 제45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35조의2제4항 또는 제40조제4항·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42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9. 2. 6.]

제70조(벌칙) 제2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7. 25.>

[전문개정 2009. 2. 6.]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2. 6.]

제7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7. 25.>

1.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2. 제38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②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중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7. 4. 1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1. 7. 25., 2017. 4. 18.>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제외한다)
 2.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49조제2항 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을 거부하거나 방해 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자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1. 7. 25., 2013. 6. 12., 2016. 1. 27., 2017. 4. 18., 2018. 4. 17.>
1.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1의2.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9조의3제3항, 제29조의4제1항, 제30조제1항·제3항, 제34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제4항, 제36조의2제5항, 제39조의2제1항,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작성·제출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의2제1항 진단, 같은 조 제5항·제7항을 위반한 자
 3. 제41조제8항, 제49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5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0. 6. 4., 2011. 7. 25., 2013. 6. 12., 2016. 1. 27., 2017. 4. 18.>
1. 제11조제1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갖춰 두거나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41조제1항 또는 제1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 진단,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6조의3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 제19조제1항(제29조의2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설치·운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 제21조, 제29조제6항·제7항·제9항, 제29조의2제7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5조의2제1항, 제36조제3항, 제38조의4제2항, 제38조의5제1항, 제42조제6항, 제43조제6항, 제44조제3항, 제49조의2제2항, 제50조제3항·제4항 또는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3항(제16조제3항 및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1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자
- 5의2.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업주(제42조제4항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 5의3. 제42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6. 제51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요구를 받고도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제51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0. 6. 4., 2011. 7. 25., 2013. 6. 12., 2016. 1. 27., 2017. 4. 18.>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25조, 제40조제5항, 제43조제3항·제7항 또는 제52조의8을 위반한 자
 3.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32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 4의2. 제34조제7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4의3.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5. 제3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40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조사 결과 및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제4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제공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9. 제42조제1항 또는 제43조제4항에 따른 통보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 또는 보고한 자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자
 11. 제48조제5항 또는 제4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12. 제51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 12의2. 제51조제3항에 따른 검사·지도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제6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0. 6. 4., 2017. 4. 18.>

[전문개정 2009. 2. 6.]

부칙 <제15588호,2018. 4. 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2]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88호, 2018. 4. 17,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안전관리자, 인증) 044-202-7729, 7733

고용노동부(산업보건과-교육, 건강검진, 석면) 044-202-7746, 7739, 7738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7758, 7754

제1장 총칙 <개정 2009. 2. 6.>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6. 4.>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5.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7.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3. 6. 12.>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집행·조정 및 통제
2.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防護裝置)·보호구(保護具) 등의 안전성 평가 및 개선
4.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기준 작성 및 지도·감독
5.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6. 안전·보건의식을 복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운동 등 안전문화 추진
7. 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8.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9. 안전·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10.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6. 12.>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3.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1.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3. 6. 12.]

제6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6. 12.>

[전문개정 2009. 2. 6.]

제7조 삭제 <2009. 10. 9.>

제8조(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10. 9., 2010. 6. 4.>

[전문개정 2009. 2. 6.]

제9조(협조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행정기관(고용노동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규제를 하려면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해당 규제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협의·조정 사항을 보고하여 확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2. 6.]

제9조의2(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7. 4. 18.>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2017. 4. 18.>

[전문개정 2009. 2. 6.]

제10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7. 4. 18.>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0., 2010. 6. 4., 2013. 6. 12.>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7. 4. 18.]

제10조의2 삭제 <2009. 2. 6.>

제11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② 근로자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 또는 결과를 통지할 것을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1.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29조의2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체를 말한다)가 의결한 사항
2. 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3. 제29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4. 제41조에 규정된 사항
5.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2. 6.]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2. 6.]

제2장 안전·보건 관리체제 <개정 2009. 2. 6.>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3. 6. 12.>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1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책임자는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③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관리책임자의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 12.>

[전문개정 2009. 2. 6.]

제14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5. 22.>

[전문개정 2009. 2. 6.]

제15조(안전관리자 등)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 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정수(定數) 이상으로 늘리거나 다시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3. 6. 12.>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4. 18.>

⑥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기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2013. 6. 12., 2017. 4. 18.>

[전문개정 2009. 2. 6.]

제15조의2(지정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2013. 6. 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13. 6. 12.>

[전문개정 2009. 2. 6.]

제15조의3(과징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의2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6조(보건관리자 등)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 12.>

③ 보건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3. 6. 12., 2017. 4. 18.>

[전문개정 2009. 2. 6.]

제16조의2(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건의하거나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경우에 사업주·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6조의3(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① 사업주(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증원·개임 및 업무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제4항·제6항,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안전관리"는 "안전보건관리"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7. 4. 18.>

[본조신설 2016. 1. 27.]

[시행일]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8년 9월 1일

2.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3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9년 9월 1일

제17조(산업보건)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산업보건의의 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

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3. 6. 12., 2017. 4. 18.>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5. 22.>

③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8조의2(안전보건조정자)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공사, 다음 각 호의 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를 함께 발주하는 자는 그 각 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그에 따른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1. 「전기공사법」 제11조에 따라 분리발주하여야 하는 전기공사
 2. 「정보통신공사법」 제25조에 따라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하는 정보통신공사
- ②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와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업무,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4. 18.]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⑧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장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2009. 2. 6.>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2. 6.]

제21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사업주는 제20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2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①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4장 유해·위험 예방조치 <개정 2009. 2. 6.>

제23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2. 6.]

제24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흠(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2. 6.]

제25조(근로자의 준수 사항) 근로자는 제23조, 제24조 및 제38조의3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3. 6. 12.>

[전문개정 2009. 2. 6.]

제26조(작업중지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근로감독관과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⑤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제4항의 원인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6조의2(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으로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2013. 6. 12.>

1. 제23조,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
2.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5조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침과 표준을 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분야별로 기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 기준제정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2. 6.]

제28조(유해작업 도급 금지) ①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 없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 줄 때 지켜야 할 안전·보건조치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경우 제49조에 준하는 안전·보건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2. 6.]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다. <신설 2011. 7. 25.>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2013. 6. 12.>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급하는 자가 해당 정보를 미리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직접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1.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⑥ 제1항에 따른 사업주 또는 제5항에 따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3. 6. 12.>

⑦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3. 6. 12.>

⑧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3. 6. 12.>

1.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할 것

2.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

⑨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5., 2013. 6. 12.>

⑩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운영,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2013. 6. 12.>

[전문개정 2009. 2. 6.]

제29조의2(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7. 25.>

③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사업주는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노사협의체는 그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⑥ 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⑦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하거나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⑧ 노사협의체에 관하여는 제1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9조제3(설계변경의 요청) ① 건설공사의 수급인(해당 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건설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를 발주한 도급인(설계를 포함하여 도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수급인이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전문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48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계획변경 명령을 받은 수급인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건설공사를 발주한 도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 요청 내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6. 12.]

제29조제4(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①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그의 수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도급하는 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요청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① 건설업, 선박 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1. 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기준
2. 사업의 규모별·종류별 사용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는 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그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④ 삭제 <2013. 6. 12.>

⑤ 삭제 <2013. 6. 12.>

⑥ 삭제 <2013. 6. 12.>

[전문개정 2009. 2. 6.]

제30조의2(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급을 받은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지도업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6. 12.]

제31조(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3. 6. 12.>

⑤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2., 2016. 1. 27.>

⑥ 제5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27.>

[전문개정 2009. 2. 6.]

제31조의2(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이하 이 조에서 "건설업기초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건설업기초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사업주(제2호는 해당 기관의 사업주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6. 1. 27.>

1. 관리책임자,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및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5.>

④ 직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⑤ 제3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7. 25.>

[전문개정 2009. 2. 6.]

제32조의2(등록기관의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1조제5항, 제31조의2제1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제32조의3(준용) 제31조제5항, 제31조의2제1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제31조제5항, 제31조의2제1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개정 2013. 6. 12., 2016. 1. 27.>

[본조신설 2011. 7. 25.]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① 누구든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

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6. 4., 2013. 6. 12.>

②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작동부분의 돌기부분, 동력전달부분이나 속도조절부분 또는 회전기계의 물림점을 가진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 6. 12.>

③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3. 6. 12.>

[전문개정 2009. 2. 6.]

제34조(안전인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이하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이라 한다)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등에 관한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준은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의 종류별, 규격 및 형식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3. 6. 12.>

②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6. 1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④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그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3. 6. 12.>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2013. 6. 12.>

⑥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명·모델·제조수량·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등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5.>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판매에 관한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5., 2013. 6. 12.>

⑧ 안전인증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5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전문개정 2009. 2. 6.]

제34조의2(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3. 6. 12.>

②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이 아닌 것은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 6. 12.>

③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는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6. 12.>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1.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2.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9. 2. 6.]

제34조의3(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안전인증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3. 6. 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안전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규격과 형식의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 6. 12.>

[전문개정 2009. 2. 6.]

제34조의4(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2013. 6. 12.>

1.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제3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전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양도·대

여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3. 6. 12.>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3. 6. 12.]

제34조의5(안전인증기관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 업무 및 제34조제5항에 따른 확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의 업무수행 실태를 조사·평가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안전인증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안전인증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인증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3. 6. 12., 2017. 4. 18.>

[본조신설 2011. 7. 25.]

제34조의6 삭제 <2007. 7. 27.>

제35조(자율안전확인인 신고) ①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3. 6. 12.>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제34조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2. 6.]

제35조의2(자율안전확인인 표시 등) ①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인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것은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③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1. 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3.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9. 2. 6.]

제35조의3(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5.>

③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7. 25.>

[전문개정 2009. 2. 6.]

제35조의4(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1.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3.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4.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2. 6.]

제36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유해·위험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기계등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5.>

③ 안전검사에 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그 유해·위험기계등이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위험기계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7. 25.>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기계등(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5.>

⑥ 안전검사기관은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해·위험기계등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5.>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의 업무수행 실태를 조사·평가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5.>

⑧ 안전검사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7. 25.>

⑨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종류, 사용연한(使用年限)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⑩ 안전검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신설 2011. 7. 25., 2013. 6. 12., 2017. 4. 18.>

[전문개정 2009. 2. 6.]

제36조의2(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①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가 근로자대표와 협의(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기준,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 방법 등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②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검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2013. 6. 12.>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사람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③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하는 등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2.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지정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⑤ 제4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유해·위험기계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정검사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4. 18.>

⑦ 자율검사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요건, 인정 방법 및 인정 절차,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2017. 4. 18.>

⑧ 지정검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지정검사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1. 7. 25., 2013. 6. 12., 2017. 4. 18.>

[전문개정 2009. 2. 6.]

제36조의3(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 또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그 안전성의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제조하는 자와 작업환경 개선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자에게는 제조물의 품질·안전성 및 설계·시공 능력 등의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2013. 6. 1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경우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내용, 등록, 등록 취소 및 환수의 절차, 등록 제한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3. 6. 12.]

제36조의4(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유해·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및 안전검사 이력 등 안전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종합관리한 정보를 안전검사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사업장의 유해·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및 안전검사 이력 등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유해·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및 안전검사 이력 등 안전에 관한 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제37조(제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이 조에서 "제조등금지물질"이라 한다)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6. 12.>

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건강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2. 제39조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이 평가된 유해인자나 제40조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이 조사된 화학물질 가운데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연구를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조등금지물질을 제조·수입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3. 6. 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2. 6.]

제38조(제조 등의 허가)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허가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6. 4., 2013. 6. 12.>

② 허가대상물질의 제조·사용설비, 작업방법, 그 밖의 허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2013. 6. 12.>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자"라 한다)는 그 제조·사용설비를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으로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자의 제조·사용설비 또는 작업방법이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사용설비를 수리·개조 또는 이전하도록 하거나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으로 그 물질을 제조·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3. 6. 12.>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3. 6. 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자체검사 결과 이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8조의2(석면조사) 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일반석면조사"라 한다)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을 조사(이하 "기관석면조사"라 한다)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석면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에 대한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의 이행 명령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이행 명령의 결과를 보고받을 때까지의 작업중지 명령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관석면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을 지도·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석면조사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제5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신설 2017. 4. 18.>

⑦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관석면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8.>

⑧ 석면조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석면조사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3. 6. 12., 2017. 4. 18.>

[전문개정 2011. 7. 25.]

제38조의3(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본조신설 2009. 2. 6.]

제38조의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①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인력·장비 등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7. 25.>

③ 석면해체·제거업자(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을 말한다. 이하 제38조의5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⑤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신고 절차, 제4항에 따른 평가 기준·방법 및 공표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⑥ 석면해체·제거업자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 2. 6.]

제38조의5(석면농도기준의 준수) ①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석면농도기준"이라 한다)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② 제1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측정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③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7. 25.>

[본조신설 2009. 2. 6.]

제39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여 관보 등에 고시한다. <개정 2010. 6. 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④ 제3항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을 평가할 대상 물질의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2. 6.]

제39조의2(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① 사업주는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작업장 내의 그 노출 농도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시설 및 설비의 설치나 개선이 현존하는 기술로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과 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의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40조(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외의 화학물질(이하 "신규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이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3. 6. 12.>

1.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신규화학물질의 수입량이 소량이거나 그 밖에 위해(危害)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은 제1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조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가 제출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조치 사항 등을 공표하고 관계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규화학물질제조자에게 시설·설비를 설치·정비하고 보호구를 갖추 두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2.>

⑤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신규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 또는 그 밖에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제39조제3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 6. 12.>

⑦ 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명령을 받은 자는 유해성·위험성 조사 결과 해당 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12.>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결과 및 자료를 검토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39조제1항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하거나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 6. 12.>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3. 6. 12.]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①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제는 제외한다) 중 제3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이하 "대상화학물질"이라 한다)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2013. 6. 4., 2013. 6. 12.>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1의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2.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3.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대상화학물질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1.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2. 제1호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③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④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⑤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7. 25.>

⑥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대상화학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 방법·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 7. 25.>

⑦ 사업주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시기, 내용 및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7. 25.>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⑨ 사업주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⑩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⑪ 근로자를 진료하는 의사,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을 포함한다), 제17조에 따른 산업보건의 또는 근로자대표 등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2013. 6. 12.>

[전문개정 2009. 2. 6.]

제41조의2(위험성평가)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 6. 12.]

제5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개정 2009. 2. 6.>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의 분석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이하 "지정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⑤ 제4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지정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전자자료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2013. 6. 12.>

⑥ 사업주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작업환경측정을 한 기관으로 하여금 개최하도록 하

여야 한다.

⑦ 지정측정기관의 유형, 업무 범위, 지정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지도·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6. 4.>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측정기관을 평가(제8항에 따른 평가를 포함한다)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⑩ 지정측정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7. 4. 18.>

[전문개정 2009. 2. 6.]

제42조의2(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뢰성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사업주와 근로자는 신뢰성평가를 받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신뢰성평가의 방법·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2. 6.]

제43조(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 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건강진단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업주는 제1항·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⑥ 사업주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 없이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

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종류·시기·주기·항목·비용 및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관리, 제2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제5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 그 밖에 건강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지도·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6. 4.>

⑩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건강진단기관 중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평가(제9항에 따른 평가를 포함한다)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및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⑪ 건강진단기관 중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건강진단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2013. 6. 12., 2017. 4. 18.>

[전문개정 2009. 2. 6.]

제43조의2(역학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疫學調査)"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7. 25.>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정보,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④ 역학조사의 방법·대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2. 6.]

제44조(건강관리수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직업성질환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 및 일정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 12.>

②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강관리수첩을 제출함으로써 해당 재해에 관한 의사의 초진소견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3. 6. 12.>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을 받은 자는 그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6. 12.>

④ 건강관리수첩의 내용·서식·용도, 그 밖에 건강관리수첩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2013. 6. 12.>

[전문개정 2009. 2. 6.]

제45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①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10. 6. 4.>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46조(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47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 제1항에 따른 자격·면허·경험·기능,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④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6장 감독과 명령 <개정 2009. 2. 6.>

제48조(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기계·기구 및 설비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6. 4.>

1.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3.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③ 건설업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의 경우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생략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한 후 이를 스스로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 또는 공사를 중지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3. 6. 12.>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2. 6.]

제49조(안전·보건진단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4. 18.>

④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의 내용,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8.>

⑤ 안전·보건진단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7. 4. 18.>

[전문개정 2009. 2. 6.]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이 조에서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 설비를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5.>

⑤ 사업주는 제4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그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설 2011. 7. 25.>

⑥ 제5항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의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⑦ 사업주와 근로자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⑧ 사업주는 제5항에 따라 사업장에 갖추 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⑩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를 평가한 결과 제8항에 따른 보완 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전문개정 2009. 2. 6.]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2.>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제39조제2항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9조제1항의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51조(감독상의 조치) ①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점검을 하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업주 등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2013. 6. 12., 2017. 4. 18.>

1. 사업장
2. 제15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30조의2제1항, 제31조제5항,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3항, 제34조의5제1항, 제36조제5항, 제36조의2제3항, 제38조의2제2항, 제42조제4항, 제43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기관의 사무소

3.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사무소

4. 제52조의4에 따라 등록된 지도사(指導士)의 사무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근로자 또는 제52조의4에 따라 등록된 지도사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5조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검사 및 지도 등을 하게 하거나,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④ 제3항에 따라 공단 소속 직원이 검사 또는 지도업무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사업장 또는 지도사의 사무소를 출입할 경우 출입자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기계·기구·설비·원재료의 대체·사용중지·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명령받은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제6항에 따른 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위험 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의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2. 6.]

제51조의2(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1. 제23조·제24조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제51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함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2. 6.]

제52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신고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6장의2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개정 2013. 6. 12.>

제52조의2(지도사의 직무) ① 산업안전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6. 12.>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지도
 2. 유해·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지도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산업보건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6. 12.>
1.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2.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3. 근로자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지도
 4. 직업성 질병 진단(「의료법」에 따른 의사인 산업보건지도사만 해당한다) 및 예방 지도
 5. 산업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업무 영역별 종류 및 업무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 12.>
- [전문개정 2009. 2. 6.]

제52조의3(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 <개정 2013. 6. 12.>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의 보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지도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3. 6. 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사시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3. 6. 12.>

④ 제3항에 따라 지도사시험 실시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⑤ 지도사시험의 과목, 다른 자격 보유자에 대한 시험 면제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52조의4(지도사의 등록) ① 지도사가 그 직무를 시작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3. 6. 12.>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지도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 6. 12., 2016. 1. 2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52조의15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⑤ 제4항에 따른 갱신등록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실적이 있는 지도사만이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도실적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지도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 6. 12.>

⑥ 제2항에 따른 법인에 관하여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3. 6. 12.>

[전문개정 2009. 2. 6.]

제52조의5(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1. 지도사에 대한 지도·연락 및 정보의 공동이용체제의 구축·유지
2. 지도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업주의 불만·고충의 처리 및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지도사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2. 6.]

제52조의6(비밀 유지) 지도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52조의7(손해배상의 책임) ① 지도사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52조의8(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자는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6. 12.>

[전문개정 2009. 2. 6.]

제52조의9(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제52조의10(지도사의 교육)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제52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를 개시하려면 제52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3. 6. 12.]

제52조의11(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① 지도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도사는 제5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 기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6. 12.]

제52조의12(금지 행위) 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

- 는 행위
2. 의뢰인으로 하여금 법령에 따른 신고·보고, 그 밖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3.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상담

[본조신설 2013. 6. 12.]

제52조의13(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지도사가 제52조의2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사업주에게 관계 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이 제52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직무의 수행을 위한 것이면 열람을 신청받은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 6. 12.]

제52조의14(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貸與)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 6. 12.]

제52조의15(등록의 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52조의4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52조의6, 제52조의12 또는 제52조의14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 6. 12.]

제7장 삭제 <2001. 12. 31.>

제53조 삭제 <2001. 12. 31.>

제54조 삭제 <2001. 12. 31.>

제55조 삭제 <2001. 12. 31.>

제56조 삭제 <2001. 12. 31.>

제57조 삭제 <2001. 12. 31.>

제58조 삭제 <2001. 12. 31.>

제59조 삭제 <2001. 12. 31.>

제60조 삭제 <2001. 12. 31.>

제8장 보칙 <개정 2009. 2. 6.>

제61조(산업재해 예방시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3. 6. 12.>

1.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지도시설·연구시설 및 교육시설
2. 작업환경의 측정 및 안전·보건진단을 위한 시설
3.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전문개정 2009. 2. 6.]

제61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61조의3(재해 예방의 자원)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자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0. 6. 4.>

1. 재해 예방 관련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재해 예방 관련 사업,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 및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전문개정 2009. 2. 6.]

제62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촉진)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보조·지원의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2. 보조·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3. 보조·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5.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
6.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 중 보조·지원 대상자가 파산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소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5.>

④ 제2항에 따라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조·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⑤ 보조·지원의 대상·방법·절차, 관리 및 감독,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소 및 환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전문개정 2009. 2. 6.]

제63조(비밀 유지)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하는 자, 제35조에 따른 신고 수리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하는 자, 제36조의2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업무를 하는 자, 제40조제1항·제6항에 따라 제출된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또는 조사결과를 검토하는 자, 제41조제8항에 따라 제출된 물질안전보건자료료를 검토하는 자, 제41조제1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하는 자, 제43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자, 제48조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검토하는 자,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하는 자 및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검토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2013. 6. 12.>

[전문개정 2009. 2. 6.]

제63조의2(청문 및 처분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2013. 6. 12., 2016. 1. 27., 2017. 4. 18.>

1. 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 제16조의3제3항, 제30조의2제3항, 제34조의5제4항, 제36조제10항, 제36조의2제8항, 제38조의2제8항, 제42조제10항, 제43조제11항, 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정의 취소
2. 제28조제4항에 따른 인가의 취소
3.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4.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5. 제37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
6. 제38조제5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7. 제32조의3, 제36조의3제3항, 제38조의4제6항, 제52조의15에 따른 등록의 취소
8. 제62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원의 취소

② 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 제16조의3제3항, 제30조의2제3항, 제32조의3, 제34조의5제4항, 제36조제10항, 제36조의2제8항, 제38조의2제8항, 제38조의4제6항, 제42조제10항, 제43조제11항, 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4항, 제34조의3제1항, 제35조의3제1항, 제36조의2제4항, 제36조의3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5항 및 제52조의15에 따른 취소, 정지, 사용 금지 또는 개선명령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2013. 6. 12., 2016. 1. 27., 2017. 4. 18.>

[전문개정 2009. 2. 6.]

제64조(서류의 보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3호의 경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2., 2016. 1. 27.>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기록
2. 제13조·제15조·제16조·제16조의3 및 제17조에 따른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과의 선임에 관한 서류
3. 제19조제3항 및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회의록
4.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5. 제40조제1항·제6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②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은 안전인증·안전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제34조제6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5., 2013. 6. 12.>

③ 일반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해체·제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하고, 기관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과 석면조사기관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5.>

④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⑤ 지도사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⑥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전문개정 2009. 2. 6.]

제6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2013. 6. 12., 2017. 4. 18.>

1. 제4조제1항제2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
- 1의2. 제15조제5항(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관에 대한 평

가 업무

2. 제27조제2항에 따른 기준제정위원회의 구성·운영
 3. 제28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평가
 - 3의2.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기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등록 업무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
 - 4의2.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업무
 5.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
 6. 제34조제5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확인
 7.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업무
 8.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9.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 9의2. 제3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검사원의 양성교육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지정검사 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0.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
 - 10의2. 제36조의4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
 11. 제38조의2제5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능력의 평가 및 지도·교육에 관한 업무
 - 11의2.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 11의3. 제38조의4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평가에 관한 업무
 - 11의4. 제39조제3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업무
 12. 제41조제10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13. 제42조제8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분석 능력의 평가 및 지도·교육에 관한 업무
 - 13의2. 제42조제9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평가에 관한 업무
 - 13의3.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신뢰성평가에 관한 업무
 14. 제43조제9항에 따른 건강진단능력의 평가 및 지도·교육에 관한 업무
 - 14의2. 제43조제10항에 따른 지정건강진단기관의 평가에 관한 업무
 15.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16. 제44조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17.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접수, 심사 및 확인
 - 17의2. 제4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8. 제49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접수·심사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확인
 - 18의2. 제52조의4제5항에 따른 지도사 보수교육
 - 18의3. 제52조의10에 따른 지도사 연수교육
 - 18의4. 제61조제3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운영 업무
 19.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지원 및 보조·지원의 취소·환수에 관한 업무
-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7. 25.]

제66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6. 1. 27.>

1. 제28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평가를 받으려는 자
 2.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게 직무교육을 이수하게 하려는 사업주
 3.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4. 제34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
 5.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6.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
 7.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
 8. 제47조에 따른 자격·면허의 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으려는 자
 9.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구획서를 심사받으려는 자
 10.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받으려는 자
 11. 제52조의3에 따른 지도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12. 제52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
 1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수익자로 하여금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2. 6.]

제9장 벌칙 <개정 2009. 2. 6.>

제66조의2(벌칙)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6. 12.>

1.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8조의4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38조제5항, 제48조제4항 또는 제51조제7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 2. 6.]

제6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7. 25., 2013. 6. 12., 2018. 4. 17.>

1. 제33조제3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4제1항, 제38조제3항, 제38조의3, 제46조, 제47조제1항 또는 제49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한 자
2. 제34조의4제2항, 제38조제4항, 제38조의2제4항, 제43조제2항, 제49조의2제3항·제10항 또는 제51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 2. 6.]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7. 25., 2013. 6. 12., 2017. 4. 18., 2018. 4. 17.>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2.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한 자

- 2의2. 제2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한 자
- 3. 제29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의2제2항·제3항, 제35조의4제1항, 제52조의6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자
- 4. 제34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 2. 6.]

제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7. 25., 2013. 6. 12.>

- 1. 제29조제8항, 제35조제1항, 제35조의2제2항·제3항, 제40조제2항·제7항, 제43조제5항 또는 제45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 2. 제35조의2제4항 또는 제40조제4항·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3. 제42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9. 2. 6.]

제70조(벌칙) 제2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7. 25.>

[전문개정 2009. 2. 6.]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2. 6.]

제7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7. 25.>

- 1.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 2. 제38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②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중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4. 1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7. 25., 2017. 4. 18.>

-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제외한다)
- 2.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3. 제49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을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7. 25., 2013. 6. 12., 2016. 1. 27., 2017. 4. 18., 2018. 4. 17.>

1.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1의2.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9조의3제3항, 제29조의4제1항, 제30조제1항·제3항, 제34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제4항, 제36조의2제5항, 제39조의2제1항,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작성·제출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제7항을 위반한 자
 3. 제41조제8항, 제49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5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2013. 6. 12., 2016. 1. 27., 2017. 4. 18.>
1. 제11조제1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갖춰 두거나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41조제1항 또는 제1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 전단,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6조의3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 제19조제1항(제29조의2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설치·운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 제21조, 제29조제6항·제7항·제9항, 제29조의2제7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5조의2제1항, 제36조제3항, 제38조의4제2항, 제38조의5제1항, 제42조제6항, 제43조제6항, 제44조제3항, 제49조의2제2항, 제50조제3항·제4항 또는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3항(제16조제3항 및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1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자
 - 5의2.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업주(제42조제4항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 5의3. 제42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6. 제51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요구를 받고도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제51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2013. 6. 12., 2016. 1. 27., 2017. 4. 18.>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25조, 제40조제5항, 제43조제3항·제7항 또는 제52조의8을 위반한 자
 3.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32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직무교육을 이

- 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 4의2. 제34조제7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4의3.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5. 제3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40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조사 결과 및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제4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제공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9. 제42조제1항 또는 제43조제4항에 따른 통보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 또는 보고한 자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자
11. 제48조제5항 또는 제4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12. 제51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 12의2. 제51조제3항에 따른 검사·지도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제6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 6. 4., 2017. 4. 18.>
- [전문개정 2009. 2. 6.]

부칙 <제15588호, 2018. 4. 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